

사업장 실무 안내

알기쉬운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CONTENTS 목 차

제 1 장 국민연금 급여

제 1 절 개요

- | | |
|----------------|---|
| 1. 의의 | 8 |
|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 8 |

제 2 절 급여의 종류

- | | |
|-------------|----|
| 1. 국민연금 수급자 | 10 |
| 2. 노령연금 | 10 |
| 3. 장애연금 | 12 |
| 4. 유족연금 | 12 |
| 5. 반환일시금 | 13 |
| 6. 사망일시금 | 13 |

제 3 절 연금급여액

- | | |
|---------------|----|
| 1. 연금급여액 구성 | 14 |
| 2. 연금급여액 수준 | 14 |
|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 15 |

제 4 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 | | |
|---------|----|
| 1. 수급기간 | 18 |
| 2. 수급일 | 18 |
| 3. 수급방법 | 18 |

제 5 절 급여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 | |
|---------|----|
| 1. 청구방법 | 19 |
| 2. 구비서류 | 19 |

제 6 절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급여의 조정)

제 II 장 사업장 실무

제 1 절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24
2. 근로자 적용기준	26
3. 사업장 신규적용	26
4.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신고	27
5. 사업장 탈퇴	28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29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29
8.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30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31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32
11. 둘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33
12. 기준소득월액 결정	34

제 2 절 징수관리

1. 의의	43
2. 연금보험료	43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44
4. 독촉 및 체납처분	46
5. 과오납금 반환청구	47

제 3 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48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49

제 4 절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53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55
3. 가입자증서의 교부	55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56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57

제 5 절 신고 및 납부 편의제도

1. EDI 서비스 -----	58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64
3.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제도 -----	68

제 6 절 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 적용 기준 -----	73
2. 근로자 적용기준 -----	74
3. 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	76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77
5.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78

제 III 장 권리구제 제도

제 1 절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	80
2. 재심사 청구 -----	81
3. 행정소송 -----	81

제 IV 장 국민연금법령

제V장 서 식

제VI장 부 록

부록 1 지사 연락처 및 관할구역 -----	152
부록 2 예상연금월액표 -----	158

제 I 장 국민연금 급여

제1절 개 요

제2절 급여의 종류

제3절 연금급여액

제4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제5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제6절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제1절 개요

1. 의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제도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퇴직금 제도는 수급자의 대부분이 50세미만인 관계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사망 시의 생계보장기능이 없음. 국민연금은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라.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되지만,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

마.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됨.

바.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제도 운영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바.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2008.1.1. 시행)



제2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 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 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1. 국민연금 수급자

- 제도가 1988년 1월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제도시행 20년째인 2008년 8월말에는 수급자가 226만 명을 넘어섬.

【연금수급자 현황】

(2008년 8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완전	특례	감액	조기/분할		
수급자	2,266,695	2,253,855	7,683	1,510,386	197,554	143,864	65,050	329,318

2.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임
-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음

【노령연금 수급요건】

구 분	수 급 요 건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재직자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 종사 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 시 그 기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재직 자노령연금으로 전환)
분할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가.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자도 60세 도달 시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됨
- 오래전부터 노령화가 시작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개혁을 1980년대부터 단행하여 현재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노령연금 등 생년별 수급개시 연령】

생 년	완전·감액·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생 년	조기노령연금
~ 52년생	60세 부터	~ 57년생	55세 부터
'53~'56년생	61세 부터	'58~'61년생	56세 부터
'57~'60년생	62세 부터	'62~'65년생	57세 부터
'61~'64년생	63세 부터	'66~'69년생	58세 부터
'65~'68년생	64세 부터	'70~'73년생	59세 부터
'69년생~	65세 부터	'74년생~	60세 부터

3.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가. 장애등급 결정

-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함
-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함.
- 또한, 한 사람에게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를 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등급 결정 후에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변경함.

※ “완치”란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4.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임

☞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 이었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지급대상	요 건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8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5. 반환일시금

-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임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음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99. 4. 1.전에 공무원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함.

나.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장애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지급대상	요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연205,220원
자녀(배우자가 혼인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36,800원 / 1인당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연 136,800원 / 1인당

※ 2008년 4월~2009년 3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가.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서 일정비율로 감액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됨
- 노령연금 종류별 급여액

구분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년 증가 시 지급률 5%씩 증가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x 50%(재직자연령별지급률)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지급률 5%씩 증가 * 연령 1세 증가 시 연령별지급률 10%씩 증가 ·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수급연령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50%~9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x 7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지급률 5%씩 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 초과 시마다 지급률 0.5%씩 증가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지급률 5%씩 증가
분할연금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노령연금 예상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	연금 보험료	감액		완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10,000	108,900	172,300	251,690	326,570	470,910	615,250
1,660,000	149,400	199,160	290,930	377,470	544,320	711,160
2,190,000	197,100	230,800	337,130	437,430	630,770	824,110
3,600,000	324,000	314,960	460,070	596,940	860,780	1,124,620

- 2008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1,676,837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나.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됨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 예상월액】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	연금보험료	장애 등급			장애일시보상금
		1급	2급	3급	4급
1,210,000	108,900	360,850	288,680	216,510	9,743,070
1,660,000	149,400	417,100	333,680	250,260	11,261,820
2,190,000	197,100	483,350	386,680	290,010	13,050,570
3,600,000	324,000	659,600	527,680	395,760	17,809,320

- 2008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1,676,837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다. 유족연금액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됨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기본연금액의 50%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연금 예상월액 】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1,210,000	108,900	144,340	228,080	282,800
1,660,000	149,400	166,840	261,450	322,960
2,190,000	197,100	193,340	300,760	370,260
3,600,000	324,000	263,840	405,330	496,110

- 2008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08년 가입, 10년~20년 미만은 1994년~2008년(15년), 20년은 1989년~2008년(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라. 반환일시금액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함

마. 사망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제4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

-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1년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임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 18세 도달, 장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함

2. 수급일

- 연금급여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
 -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됨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수급방법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됨



제5절 급여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1. 청구방법

- 수급권자 본인이 해당 급여지급청구서와 급여종류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음
-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사에 청구하여야 하나, 그 외의 연금 및 일시금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음.

2. 구비서류

- 기본적인 서류로 수급권자 본인 청구 시 급여종류별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온라인 은행계좌가 필요하며(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필요),
- 추가적으로 급여종류 및 부양가족연금대상 유무에 따라 수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장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추가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2. 국민연금장애진단서 (공단서식) 3.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공단서식) 4.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2. 장애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견서 - 지체장애자용 (관절운동 장애) - 지체장애자용 (척추 및 사지마비) 3.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 청구시 필요한 추가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3. 사망 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등록사무 처리관서 제출용 사망증명서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연금급여 청구 안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구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할 급여의 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 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가 권리발생일로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됨
-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노령, 장애, 유족)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경과, 국외이주·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제6절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급여의 조정)

- ➔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음
 -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 한사람에게 둘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한 하나의 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함(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 ➔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됨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애 또는 유족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

-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됨

제 II 장 사업장 실무

제1절 자격관리

제2절 징수관리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제4절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5절 신고 및 납부 편의제도



제1절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가. 용어정의

용어	내용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사용자	○ 사업주나 사업경영자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소득 월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중위수 기준소득 월액	○ 임의가입자와 지역·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입자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입자였던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급여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 수급권이 발생되고 있지 아니한 자
특수직종	○ 갯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 지급자)
근로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나.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별	종류	가입요건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자기가 원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자 외국인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일반가입자 ○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 18세 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재외동포 등 포함)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 18세 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재(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특수직종근로자로서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근로자 적용기준

가. 근로자의 개념

-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 (다)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라) 방학기간 등에 단속적·일시적으로 근로하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세부 적용기준

- (1) '근로계약 내용' 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 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 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 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 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 '실제 근로시간' 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

3. 사업장 신규적용

가.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나. 사업장 적용일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로 적용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3)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내용변경(정정)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 “내용변경 관련” 유의사항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변경사유가 아님
- 현재 △△주택관리업체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용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탈퇴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내용변경처리가 가능한지
 -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계속성 및 동일성(권리·의무 주체가 동일)이 유지되는 경우는 내용변경이 가능함

5. 사업장 탈퇴

가. 탈퇴대상

- (1) 휴·폐업 사업장
- (2) 통·폐합 사업장

나.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 통·폐합사실 입증서류
- (4) 탈퇴일 결정

- (가) 사업장탈퇴일은 원칙적으로 업무종료일(휴업일 전일, 폐업일 당일)의 다음일로 결정하되, 휴·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휴·폐업일인 초일로 적용.
- 휴·폐업이외의 사유에도 동일하게 업무종료일의 다음일로 사업장탈퇴처리
- (나) 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가능
- 사업종료 및 직원퇴사처리 관계서류(인사발령대장, 급여대장 또는 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등) 또는 기타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 탈퇴신고(신청)시 유의사항

-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2) 휴업기간 종료 또는 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이 재개되었을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하여야 함
- (3)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사업장을 흡수하는 사업장(본점사업장)은 폐합(흡수)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자격취득부호 “9”)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가. 신청대상

- (1) 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 (나)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나. 분리적용 신청

- (1) 신청자 : 사업장 본점 사용자
- (2) 제출서류
 - (가) 본점 또는 지점 모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지점은 분리적용 해당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내역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나)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1부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신고대상

-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2)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3)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4)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나. 자격취득시기

위의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다. 제출서류

-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2) 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특수직종근로자
 - 광원 :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갱내작업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취득 시기” 예시

- 근로자 A가 2008. 7. 4. 입사하여 만 1개월이 되는 날인 8. 3. 까지 8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A의 자격취득일은 최초입사일인 2008. 7. 4.이 됨
- ※ A는 ①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80시간 이상이거나 ②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B가 2008. 7. 4. 입사하여 7. 4. ~ 8. 3., 그리고 8. 4. ~ 9. 3.까지 월 80시간미만을 근로하다가 9. 4.부터 월 8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B의 자격취득일은 근로자가 된 날인 2008. 9. 4.이 됨
- ※ B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8.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의무자

사용자

나. 신고기한

- 내용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 (1)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 공통내용 변경 신고 시)
-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국민연금 고유내용 변경 신고 시)
- (3) 필요시 제출 서류

변경(정정) 항목	필요시 제출 서류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 번호	- 외국인등록증사본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광원 :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여부 입증서 - 부원 :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일·취득사유, 상실일·상실사유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사발령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월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납부예외일·재개일·재개예정일 ○ 예외사유	-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이외의 내용정정 신고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사용하여 국민연금으로 신고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가. 신고대상

- (1) 사용관계 종료(퇴직)
-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3) 60세 도달
- (4) 타 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 (5)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나. 자격상실시기

- (1)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 계속 근로 중 월 80시간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진출된 자는 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다.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자격상실 시기” 예시

- 2008. 7. 4부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C가 7. 4~8. 3, 그리고 8. 4~9. 3까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9. 5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9. 6이 됨
- ※ C는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1) 신청대상

- (가)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병역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

(2) 제출서류

-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 (나) 필요시 진단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 (1) “납부예외일”은 무보수 휴직일임.
- (2)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복직월 보험료 납부)

11.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유형

- (1) “가” 유형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나” 유형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 (3) “다” 유형 : 둘 이상 적용사업장 중에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 (1)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2)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가) “가” 유형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
 - 나) “나” 유형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나”유형 예시 】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1,950,000원, 1,720,000원인 경우

▶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1,912,000원

$$\cdot \text{A사업장} = \frac{1,950,000}{1,950,000 + 1,720,000} \times 3,600,000 = 1,912,806\text{원}$$

▶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1,687,000원

$$\cdot \text{B사업장} = \frac{1,720,000}{1,950,000 + 1,720,000} \times 3,600,000 = 1,687,193\text{원}$$

(다) “다” 유형

- 둘 이상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만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자로 관리
-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 받는 경우
 -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12. 기준소득월액 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 (1)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용자가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22만원)부터 최고 기준소득월액(36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

나. 소득의 범위

-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포함)을 차감한 소득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 (1)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2) 연봉제 시행 시 매월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 (3)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 예시 :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라.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다)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셈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2) 적용기간
 - (가) 근로자의 경우
 - 2008년 10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09년 3월까지 적용
 - 2008년 10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10년 3월까지 적용
 - (나)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 2008년 10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09년 6월까지 적용
 - 2008년 10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10년 6월까지 적용

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1) 신고대상
 -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전년도중 3월 이상 (전년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자
 - ※ 납부예외증인 자는 제외
- (2) 신고의무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사용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
- (3) 신고기한 및 방법
 - (가) 신고기한
 -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매년 5월 말일까지
- (나) 서면신고 : 매년 1월·4월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송부하는 ‘소득총액신고서’에 전년도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달인하여 제출
- (다) 전산매체신고 : 공단에서 제공하는 layout으로 신고
- (라) EDI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마)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사회보험 포털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단, 소득총액신고 대상 사업장 구축시점(1월 초) 기준 가입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신고 가능
- (4)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
 - (가)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고 결정
 -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
 - (나) 적용기간
 - 근로자의 경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5)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 등의 계산방법
 -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에는 전년도중(1월~12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단, 20일미만 근무한 월과 그 기간에 받은 소득액은 제외
 -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종사하였으나 20일 이상 근무한 월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함.
 - 소득총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16)번 급여액”을 기재
 - 교대근무(격일제 등)하는 경우에는 “1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로”, “2일 근무 1일 휴무는 3일로”보아 소득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계산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근무월수를 합산하여야 함
 - (나) 기타 유의사항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해당 사업장에 3월 이상(매년 10. 1. 이전 입사자)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동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로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

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시 사용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또는 신고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여 입증자료 첨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매년 하반기 소득총액 신고내역과 소득관련 공적자료를 비교하여 소득이 낮게 신고된 경우 보험료를 소급하여 정정 및 고지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총액신고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소득총액에 포함
-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 합의에 의한 소득이 아닌 실제소득으로 신고
- 성과급, 위로금 등 각종 과세대상 급여를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성과급, 위로금, 특별상여금, 인정상여금 등 과세소득은 소득총액에 포함
- 자녀학자금 보조금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종사업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만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으므로, 자녀학자금은 소득총액에 포함

바.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의 통지

- (1)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
 -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매월 고지서에 동봉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2) 정기결정의 통지
 - 공단은 매년 3월·6월중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사. 소득총액 적정신고 확인·정리

- (1) 개요
 - 매년 하반기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소득총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2) 내용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소득총액신고가 낮게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안내문 발송

(3) 유형별 정리방법

확인유형	제출서류
· 전년도 소득이 공적자료 내용과 동일한 경우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EDI가입사업장은 EDI로 신고가능
· 전년도 소득이 공단신고 내용과 동일한 경우 · 전년도 소득이 공적자료 및 공단신고 내용과 모두 상이한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

- 소득총액을 소득관련 공적자료에 비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인 4월·7월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2009년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전년도 소득총액

- 2008.01.01.~ 2008.12.31. 기간의 소득총액
- 2008년 중에 입사한 경우는 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주요업무 흐름

♣ 근로자의 경우

- 2009. 1월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2009. 2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2009. 3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 2009. 4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2010.3월)
- 2009. 6·7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2009. 4월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2009. 5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2009.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 2009. 7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2010.6월)
- 2009. 10·11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

소득총액 신고요령

신고대상

2008.10.1.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중인 자 및 2008.10.2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

신고할 사항

- 근무월수 : 2008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월수(20일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
- 소득총액 : 위 근무월수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신고.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신고기한

근로자 : 2009년 2월말까지, 사용자 : 2009년 5월말까지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08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소득총액 신고 시기 및 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법령 개정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방법 예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예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귀속연도		2008.1.1.부터2008.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 별 소 명 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⑮-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상사	○○기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15,000,000	3,000,000			15,000,000			
	⑭상	여	5,000,000	500,000			5,00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⑯	계	20,000,000	3,500,000			20,000,000				
비과 세 소 득	⑰연구활동비									
	⑱국외근로	1,000,000								
			⑲-1야간근로수당	⑲-2출산보육수당	⑲-3외국인근로자	⑲그 밖의 비과세	⑳비과세소득계			
						1,200,000	2,200,000			

2009년도 소득총액 신고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월수	소득총액	현재기준소득
00001	홍길동	123456-*****	10	20,000,000	

(☞ ○○기업에서 2월 28일 퇴사 후 □□상사에 3월 1일 입사한 경우)

근무월수 산출 사례

- ▶ 동일 사업장에 2008.1.1.~ 3.25. 2008.8.1.~12.31.근무 : 5개월(8~12월)
- ▶ 실제 근무기간 2008.1.1.~ 12.31. 2008.7.1.국민연금 가입 : 12개월(1~12월)
- ▶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08.1.1.~ 4.30.근무, B사업장에 5.1.~ 12.31. 근무 : 12개월(분리 적용 사업장간 전입·전출시 합산하여 기재)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근로자

- 2008.10.1.이전 취득자 : 2008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 적용
- 2008.10.2.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0년 3월까지 적용

♣ 사용자

- 2008.10.1.이전 취득자 : 2008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09년 7월~2010년

6월까지 적용

- 2008.10.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0년 6월까지 적용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 2009. 3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9. 6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9. 6·7월 공적자료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2009년 4월로 소급적용합니다.
- 2009.10·11월 공적자료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2009년 7월로 소급적용합니다.

기타 소득총액 신고방법

전산매체(디스켓, CD) 신고

- 공단에서 제공하는 layout형식으로 신고

EDI 신고

- EDI란 :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및 자료수신 서비스
- EDI 민원서비스 4대 사회보험 동시신고업무, 소득총액신고
- EDI 업무처리절차 ① EDI 가입(www.nps.or.kr) ▶ ② EDI 프로그램 설치 ▶ ③ EDI 환경설정 ▶ ④ 보안인증서 설치 ▶ ⑤ 신고 및 신청업무 ▶ ⑥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
- 소득총액 신고방법(직접입력)
 - ①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년)”수신 ▶ ② “문서조회” ▶ ③ 개인별 근무월수, 소득총액 입력 ▶ ④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 파일을 이용한 신고방법(파일사양은 상기사양과 동일)
 - ① “신고(송신)업무-소득총액신고(년)”선택 ▶ ② “화일 가져오기” - “해당화일 찾기” - “드라이브, 폴더, 해당화일”지정 - “화일 열기”선택 ▶ ③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송신
- ♣ EDI 가입요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소득총액 신고요령은 EDI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소득총액 신고 가능

※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및 소득적정신고 확인시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법령 개정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각종 급여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소득세법」상 각종 급여 (2008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
각종 급여	수당 설명	비과세 한도	포함여부
특정 상여금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음)	과세대상	전액 포함
국외근로소득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이내 급여/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 급여는 비과세	월100 (150)만원	월100(15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야간근로수당 등	· 월정급여 100만이하(일용근로자 포함)로서 생산 및 관련종사자나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받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전액)은 비과세	연240만원	연240만원 초과 금액 포함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이 비과세	전 액	전액 미 포함
식사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10만원	월1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월10만원	월1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실 비 변 상 적 급 여	취재수당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월2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연구보조비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월20만원 월2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일직·숙직료·여비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실비한도 실비한도 초과 금액 포함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월20만원	월20만원 초과 금액 포함

제2절 징수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 연금보험료

가. 정 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단위 : %)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가입자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text{연금보험료} = \text{기여금} + \text{부담금}$$

- (1)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 고지함.

$$\text{당월분 고지금액} = \text{당월분 연금보험료} \pm \text{소급분 금액}$$

-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차감 (-)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 (가) 사업장가입자가 취득 당월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월분은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함. 다만, 지역가입자가 해당월에 납부예외이면서 취득월에 납부하기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을 사업장에서 납부함.
- (나)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전입 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다)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 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 원천공제 시 유의사항 】

구 분	사유발생 (월)	공제	구 분	사유발생 (월)	공제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
	60세 도달하는 월	○		퇴사월	○
1월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	납부재개	복직월	×
신규채용	보수지급일전 채용	×			
	보수지급일후 채용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자격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에 사유발생월은 원천공제대상임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 (1)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2) 납부기한 및 장소
- (가)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나)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수협(지역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3) 납기 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4) 납기 후 납부(연체금 발생)
 -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연체금

-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 ※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1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적용
- ※ 2006.9월 이전 월분은 종전규정에 의해 3개월 단위로 5%씩
추가가산 최고 15%적용

라. 연체금 징수예외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연체금 징수예외신청서 1 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사업장 폐쇄로 인한 체납(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화재 등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체납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관서등의 증명서 · 국세의 납기연장 승인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등 · 재해지역 내의 행정기관 확인서 · 직장폐쇄신고서 및 해제신고서 사본 · 소방서발행 화재증명원

4. 독촉 및 체납처분

가. 독촉(국민연금법 제95조제1항)

- (1) 공단은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연체금을 가산한 체납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함.
- (2) 독촉절차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 납부기한(10일 이상)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함.

나. 체납처분(국민연금법 제95조제3항, 국세징수법)

- 연금보험료의 납부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함

다. 체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벌칙(국민연금법 제128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가입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

- 공단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5. 과오납금 반환청구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이자,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청구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1부



제 3 절 외국인 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가)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급에 상응하는 연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나)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급에 상응하는 연급”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마)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63개국)	가이아나, 까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39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적용 제외국(1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상기 국가는 2008년 12월 파악된 자료이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관련 사항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가)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첨부(증빙)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등 재외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국적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제출가능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3) 외국인 사업장가입자관련 기타신고사항

○ 내국인 사업장가입자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가. 체결목적

○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1) 단기간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되도록 하여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이중가입 배제)

(2) 협정상대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입기간 합산)

(3)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함 (동등 대우)

(4) 협정 당사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급여의 해외송금 보장)

나.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됨

구 분	국 가	협정발효일	협정형태
협정발효 (14개국)	캐나다	1999. 05.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영 국	2000. 08. 01.	·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독 일	2003. 01.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네덜란드	2003. 10. 01.	· 보험료 면제협정
	일 본	2005. 04. 01.	· 보험료 면제협정
	이태리	2005. 04. 01.	·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프랑스	2007. 06.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몽 골	2007. 03. 01.	· 보험료면제협정
	호 주	2008. 10.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 코	2008. 11. 01.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 국	· 연금보험료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이 2003년 2월 28일부터 발효 중임.	

다. 이종적용면제 요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1) 신청대상자

- (가)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몽골, 체코, 호주는 5년, 이태리는 3년, 헝가리 프랑스 3년, 중국은 기간제한 없음)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헝가리,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체코는 3년) ※연장에 있어서는 별도 합의절차 필요
- (나)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자로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자(단, 한-독 협정의 경우 사업활동 수행지에서 납부)
- (다) 기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 보험료 납부면제가 가능한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협정상대국 국민, 선원, 항공승무원 등

(2)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또는 지사

(가)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나) 가입증명서의 활용

- 근로자· 사용자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협정상대국의 연금실무 기관에 제출하여 적용제외 신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발급된 자는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파견기간 동안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독일은 고용보험료, 미국은 산재보험료, 프랑스 산재·의료보험료 포함) 납부 대상에서 제외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 제출

(1) 제출 대상자

- (가) 협정상대국에서 국내로 일정기간(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몽골, 체코, 호주는 5년, 이태리·헝가리·프랑스는 3년, 중국은 기간제한 없음)동안 파견된 근로자
 - 협정상대국에서 국내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독일, 일본, 이태리·헝가리·프랑스, 체코는 3년)
- (나) 협정상대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로 국내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자(단, 한-독 협정의 경우 사업활동 수행지에서 납부)
- (다) 기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면제가 가능한 협정상대국 사업장에 고용된 우리 국민, 선원, 항공승무원 등

(2)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또는 지사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사본 불가) 1부
- 해당 사업장 면제요청공문(임의양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라. 국가별 협정 추진현황

구 분	국 가 명
발효(15)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잠정조치), 이태리, 일본,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헝가리, 몽골, 체코, 호주
서명(5)	벨기에, 필리핀, 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교섭진행(9)	스위스, 덴마크, 퀘벡(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아르헨티나
교섭개시 준비(25)	리비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인도, 터키, 슬로베니아,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그리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협정개정추진	일본, 중국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

○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됨

○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26조, 영 제113조)

☞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경우에만 지급함



제 4 절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가. 의의

당해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보험료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 또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청구자료 유형

청구자료	설 명	비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상황 등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당해 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전체내역(취득, 상실)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연도별, 월별)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월별 납부내역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납부증명	당해 사업장가입자 개인별(전체, 특정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납부증명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 적용시기 : 1993.1.1. 시행 1999.4.1. 폐지	
00년00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당해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내역 - 자격변동사항(취득, 상실신고 등)내역 등 표기	

다. 신청자격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 및 사업장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 업무대행업체에 한함

라. 제출서류

- (1)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장용 또는 가입자용) 1부
- (2) 신청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가입자(였던 자 포함)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내 방	본 인	· 신청서(본인의 서명 또는 인) · 신분증(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본인 내방시에는 신청서 작성 생략 가능
	가 족	· 신청서 ·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불가)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 · 공단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불요
	대리인	· 신청서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불가) · 대리인신분증(사본 불가)	· 발급대상자 본인 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 · 발급대상자 본인과 유선 확인할 수 있음
팩 스	본 인	· 신청서(본인의 서명 또는 인) · 신분증 사본	· 발급대상자 본인과 유선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1

○ 사업장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내 방	사용자	· 신청서 · 신분증(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신청서에 사용자 직인(사용인감) 또는 사용자 서명이나 날인 · 사용자 내방시에는 신청서 작성 생략 가능
	당해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	· 신청서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불가)	· 신청서에 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업무대행자	· 신청서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불가)	· 신청서에 사용자 직인(사용인감)날인 · 공단전산 등록업체(유선확인)
	탈퇴 사업장 사용자의 대리인	· 신청서 ·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사용자의 위임장 · 사용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서에 사용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필요시 해당 사용자에게 전화 확인
우 편	· 문서로 요청	· 사업장에 전화 확인 · 탈퇴사업장은 우편 신청 불가	
팩 스	· 신청서(사용자 직인 또는 사용인감)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사업장에 전화 확인 · 탈퇴사업장은 팩스 신청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1

마. 제출처

국민연금공단 인근지사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가. 의의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였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식 심사청구 제도로,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가입자(자격상실자 포함)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청요건

- (1)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 (2)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 (3) 제출서류
 - 자격확인 청구서 1부
 -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제출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3. 가입자증서의 교부

가. 신규발급

- (1) 최초 국민연금 자격취득자
- (2) 사업장의 착오신고(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증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잘못 발급된 증서는 반납하여야 함

나. 재발급

- (1) 대 상 : 가입자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
- (2) 제출서류 : 가입자증서 재교부신청서 1부

다. 증서교부 시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 (1) 최초 국민연금에 취득신고를 한 자와 재교부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 사업장에 송부
- (2) 사용자는 가입자 본인에게 교부
 - ※ 상실자의 경우 그 소재지가 불명하여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단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 발급된 증서를 반송하여야 함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 요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기준소득월액 등급 등의 내용변경 및 내역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였던 자)에게 알리기 위함

나. 발송시기

매월 25일경(정기고지서에 동봉)

다. 주요내용

- (1)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 가입자(였던 자)의 취득·상실 등을 표기하여 그 사실을 알림
- (2)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전월 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지연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급기간의 월수 및 금액(당월분 제외)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감(-)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합산(+)
- (3) 퇴직금전환금 : 「국민연금법」제75조(종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월분부터 1999년 3월분까지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입한 금액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 (1) 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가. 개 요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매년 통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 안내사항

- (1)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간
 -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부터 현재까지의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력 포함)
- (2) 예상연금액
 - 연금수급발생시점을 가정한 가입자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액

다. 발송시기

연중 1회

라. 내역안내서 교부 시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 (1)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내역안내서를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
- (2)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사로 내역안내서를 반송하여야 함
- (3) EDI가입사업장은 자체전산시스템을 이용한 e-mail 배부가 가능함



제5절 신고 및 납부 편의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각종신고(자격취득·상실신고 등) 및 국민연금의 신청(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나. EDI 서비스 이용 시 좋은 점은?

-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4대 기관 방문시간 절약
- 신속한 처리결과 통보로 정확한 자격관리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 보안인증서에 의한 문서 송·수신 기능으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 저장매체를 이용한 다량의 신고업무 가능
- 별도 신청 없이 매월·수시 국민연금의 각종정보 및 데이터 수신 가능
- 매일 신규문서 도착 자동안내 서비스와 PC사용 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Remote Control)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 제 증명을 지사 방문 없이 EDI로 발급 가능(직인날인)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DI 통합로그인으로 편리한 이용

다. EDI 종합민원 서비스 내용

(1)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업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신고업무	
사업장	사업장탈퇴/보험관계소멸신고(청)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 여부만 정정 가능

(2) 국민연금 고유 신고/신청업무

□ 국민연금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업무	
신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취득 및 상실일,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산재요양)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근로자) 소득총액신고서(년) ·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서
신청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 발급(사업장용/가입자용)신청서 ① 가입자 가입증명 ② 사업장 가입증명 ③ 업 장 국민연금 보험료납부증명 ④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⑤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내역 ⑥ (당월분)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 증명 ·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신청서 ·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고지 신청서 · 가입내역안내 출력순서 신청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는 기준소득월액, 취득일, 상실일, 취득사유, 상실사유, 취득취소, 상실취소의 경우 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정정신고 가능.



(3) 통지업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으로 신고·신청한 자료의 처리결과 및 국민연금 제공업무	
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4대 보험으로 신고한 처리결과 내역) · 전자문서 접수 및 처리현황, 정상/반송처리 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통지서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고지 내역서
통 지 업 무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고지내역 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월분 상세내역 ② 2급 분 상세내역 ③ 당월분 연금보험료 보험료별 현황 ④ 당월분 고지내역, 전월분 납부내역 ⑤ 당월분 산출내역 ⑥ 당월분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당월취득자중 취득월 미부과자 ⑧ 당월분 과오납금 이자내역 ※ 1차 고지내역은 전산입력 마감일+1일(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17일), 2차 고지내역은 전산입력마감일+3일(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19일) 송신됨 · 정기자료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명·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② 납부재개 예정자 ③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④ 특수직종 근로자 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대상자 ⑥ 가입자 확인 대상자명부 · 신규취득자 가입내역안내서(월)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고지 내역서(월간)
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료납입내역확인서 · 가입내역안내서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개인사업장 사용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확인대상자 명부 · 개인사업장 사용자 기준소득월액 확인대상자명부

(4) 부가서비스 업무

□ EDI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문서 도착 자동알림 ② 인사·급여관리 시스템(별도가입) ③ 문서 재송부 요청 ④ 파일신고 서비스 ⑤ 각종 신고서식 ⑥ EDI 업무 매뉴얼 ⑦ 커뮤니티 연동 ⑧ 개인별 문서검색 기능 ⑨ 지사문의 서비스 등

라. EDI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1) EDI 가입하기



-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사업장전자민원→국민연금EDI안내→가입하기→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 버튼 선택
- ② 가입하기화면에서 가입할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 클릭
- ③ 사업장명, 실명인증,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가입 경로 등 해당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2)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사업장전자민원→국민연금EDI안내→EDI자료실→54.사회보험EDI통합설치프로그램 선택
- ② 파일명(siedissetup.exe) 선택 → 저장 → 다운받을 경로 지정 → 실행 버튼 선택
- ③ 지정된 경로에서 다운로드된 siedissetup.exe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완료 후 바탕화면에 사회보험EDI 아이콘 생성

(3) EDI 환경설정 하기



-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EDI 아이콘 실행→로그인→환경설정가기 버튼 클릭
- ② ID 추가시 'ID추가 버튼' 클릭
- ③ 자동표출 항목 확인 및 누락항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입력 후 'ID 환경저장 버튼' 클릭

(4) 인증서 발급하기



※ 문서 송·수신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임

④ 인증서 정보, CERTMANAGER 창에서 확인 버튼클릭

⑤ 인증서 백업 창에서 이동식 디스크 삽입 후 예(Y)을 선택한 후 인증서 백업 성공이 표출되면 정상

※ USB 또는 이동식 디스켓 없을 경우 차후 백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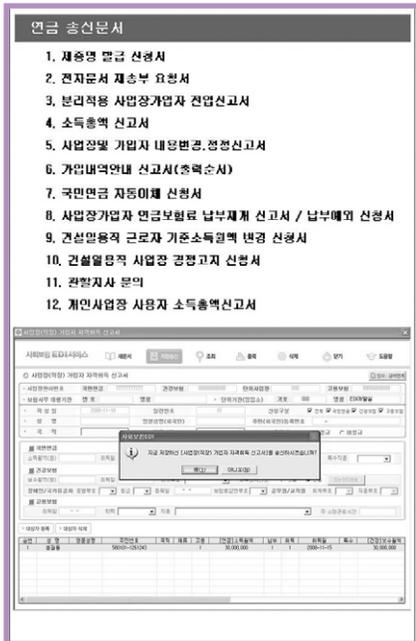
※ 사회보험EDI에서 사용중인 인증서는 은행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 심사를 거쳐 자체 발급한 EDI 업무전용 인증서임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EDI 아이콘 실행→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 버튼 클릭

② “[196614] 디렉토리 서버에 인증서가 없습니다” 창에서 확인 버튼 클릭

③ 보안인증서관리 화면(자동팝업)→인증서발급/재발급 클릭 → 인증서 패스워드 입력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

(5) 신고 및 신청업무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의 신고서 작성 업무 선택

③ [4대공통신고서] [연금신고서] [건강신고서]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입력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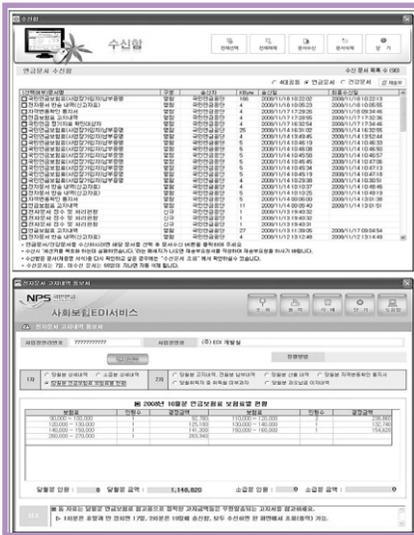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 신고 (신청)완료

(6)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 ① 바탕화면에서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실행 →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실행 클릭
 - ② 화면 좌측의 수신함[4대공통문서][연금고유][건강고유] 선택
 - ③ 수신 받고자 하는 문서선택 후 문서수신 버튼 선택하여 수신
 - ④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수신완료 후 수신문서 조회여부에서 예(Y) 선택
- ※ 재조회 시 화면 좌측상단의 "수신문서조회" 메뉴에서 해당서식 클릭하여 조회

※ 국민연금 고유 업무 신고·신청의 경우, 익일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나, 아래의 제증명(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분) 및 신청자료는 처리결과를 당일(30분이내) 확인이 가능함.
 - 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장 가입증명,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건설일용직 경정고지(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납부재개 신고서, 자동이체신청서

마.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이란?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업무를 공단으로 송신한 해당 월부터 정액제로 부과(부가세 별도)되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안내문, 전자문서 고지내역 등)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함.

(2) 이용요금표

(단위 : 원/월)

근로자수	1~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이용요금	무료	2,500	3,700	3,800	4,000	6,000

※ 이용요금은 매월 20일경 전·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부과

바. 문의전화

- KT 콜센터(080-318-5306), 관할지사(국번없이 1355)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신고 및 자격·보험료 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

- (1) 연중, 장소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서비스
 - 사무실·자택·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나 연중 무료로 사용가능 (민원신고 및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2) 처음 사용자 및 업무미숙자에 대한 도움말 및 신고 안내서비스
 - 전자민원 미리해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처음사용자도 쉽게 민원신고 가능
 - 서식작성 시 어려운 용어 및 작성방법에 대한 용어사전 제공
 - 문제발생시 사용자PC를 직접 연결하여 해결하는 고객지원서비스
- (3) 민원 접수결과의 즉시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E-Mail 통보 서비스 제공
- (4) 각 기관의 사이버 민원창구 단일 로그인 연계 서비스
 - 한 번의 로그인으로 4대 사회보험 5개기관(4대 사회보험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연계서비스(Single Sign On 연계기능)
 - 주요 사이버민원의 연결서비스로 대부분의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신청) 및 조회 가능
 - ※ 단,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이용 가능
- (5) 안전한 개인정보 및 민원접수 내역 보호
 -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로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
 - 민원접수내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필요 시 즉시 조회 및 출력가능

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내용 (2008년 12월)

서비스	회원	사업장회원	개인회원			
4대보험 민원신청	사업장	사업장직종(해당)/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사업장내용변경/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자동이체신청 사업장탈퇴(소멸)/보험관계소멸신고(보험계약해지신청)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 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개인) 내용변경신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 내용변경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동이체신청			
	사업장 가입자 (대표자, 근로자)	사업장(직장)가입자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사업장(직장)가입자 및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연금, 건강, 고용)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2008.1.21 이후/5인 이하 사업장만 신고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 가입자 정보변경	사업장(직장)가입자내용변경 신고(연금, 건강, 고용) 사업장(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납부재개소득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 고용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피보험자 전근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표준보수율액 변경신청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해지 신청서)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고용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 가입신청신고 ※ 퇴직, 퇴사 등 상실 신고는 일반 내국인 신고와 동일 '08.1.2이후 외국인 취득/상실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관련메뉴에서도 처리가능합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 서비스 : 접수한 민원신고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외부기관 연계서비스	건강보험	기간별 고지, 납부, 채납 내역조회	건강보험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보험료 고지/납부내역 보험료 미납내역 보험료 고지서 재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내역 조회 본인부담금급금 신청 본인부담보상금 신청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결과 조회	
	심사 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조회 요양기관 청구심사정보 조회 신청 및 자료제출 확인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확인(약제급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확인(재양질개분만) ※ 의료기관 사업장용	고용보험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요청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요청		
	신재보험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고 보험료 신고서 기준입금 적용신고 임채부담금 경감신청 보험료 납부서 17분 보험료 납부서 2-47분	보험료 납입고지서 고지분 납부 신고분 납부 자진납부 영수증 조회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보험료 미납내역 조회	국민연금	자동이체신청 가상계정번호 발급 고지서 재발급 납부영수증 발급 우편물 수령지 신청 가입자 증서 재발급 전화번호 변경 소득없는 납부예외신청 연간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연금 급여 청구 과오납금 청구 보험료 납부내역 보험료 고지내역 소득공제내역 예상연금 조회 희망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연금 지급내역	미청구연금 조회 과오납금 조회 전자납부번호 조회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장애/유족 연금 심사 진행상태 심사/재심사 청구 진행상태 가입증명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퇴직금 전환금 납부증명서 보험료 미납증명서(가인회생 신청용) 연금 지급 내역증명서
		국민연금	자동이체신청 수납전용계좌 납부 신청 가상계좌번호 발급 고지서 재발급 납부영수증 발급 자격변동 통지서 재발급 과오납금 청구 사업장기초 조회 사업장정보 조회 사업장가입자 명부 조회 보험료 고지내역 사업장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전자납부번호 조회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심사/재심사 청구 진행상태 증명서 발급 사업장보험료 납부증명서 보험료 고지내역 증명서 사용자 부담금 납부확인서 퇴직금 전환금 납부증명서 사업장가입자 증명서(전체) 사업장가입자 증명서(개인)	
		전자정부(G4C), 산업지원부	전자정부(G4C)			
		전자고지납부 -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및 건강보험(사업장) 보험료 인터넷 조회/납부				
	보험정보 조회	사업장 가입자 등록내역조회 사업장 가입내역 상세조회	보험별 사업장기초등록 내역조회 4대사회보험료 계산	4대보험 가입여부확인, 4대사회보험료 계산		
	기타	사회보험 정의 및 각 4대보험 관련 정보 제공 / 포털서비스 이용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릭 메뉴, 동영상 메뉴뉴스, 작성안내 등) 정보마당(4대보험 지식검색, 병원/약국 태기 등), 참여마당(자유게시판, 질문있어요, 제안합니다 등) 자료실 : 서식자료실, 기타자료실, 법령자료실, 용어사전 등 / 민원사례 FAQ 및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라. 포털사이트 가입 및 이용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 ① [익스플로러 상단메뉴]→[도구]→[인터넷옵션] 창의 중간 오른쪽 [설정]메뉴를 “페이지 열때마다”로 체크→ “확인” 선택→[쿠키삭제][화일삭제] 실행
- ② [인터넷옵션]창의 [연결]탭 선택→하단의 “LAN 설정” 선택→모든 체크박스를 빈칸으로 설정→“확인” 버튼 선택→[인터넷 옵션]의 “확인” 선택

(2)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이트 접속 시,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며, 자동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마당 - 질문있어요 - 먼저 읽어보기]를 참고하세요!
 - ※ 한글주소 ‘4대보험, 4대사회보험’ 를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접속 가능합니다.
- 사업장관련 민원신고, 보험정보조회 등의 업무처리는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가입자 신고, 4대보험 가입여부확인 등의 업무처리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사업장이 설립된 지 30일 이내인 사업장은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회원정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신규사업장 제외)

(3)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 회원가입 시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함
 - 개인사업장 : 대표자 개인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법인사업장 : 법인용 인증서
 - ※ 기존에 인터넷뱅킹용, 증권거래용, 전자거래용 등에서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은행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아이디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회원)나, 주민번호(개인회원)로 조회
 - 비밀번호 재설정 : 회원정보에 등록된 ‘비밀번호 조회 질문/답변’ 또는 ‘공인인증서’로 재설정

(4) 인터넷 민원신고(신청) 하기

① 로그인 후

- 초기화면의 [민원신청] 또는
- 상단메뉴의 [전자민원-민원신청] 또는
- 화면 우측 킷 메뉴의 [전자민원]을 클릭

② 신고(신청) 메뉴를 선택

- 작성예시 및 도움말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에 대한 신고방법 숙지!
- (*필수입력사항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요 단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풍선도움말이 나타납니다.
- [정보와자료-용어사전]을 클릭하면 4대보험 관련 용어 및 신고서 등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에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시켜야 접수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민원신고 후, '서식출력' 및 '접수증 출력' 이 가능합니다.
- ※ 누구나 "전자민원 미리해보기"를 클릭하면, 실제 인터넷 신고와 똑같은 화면에서 민원신고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 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① 로그인 후

- 초기화면의 [민원처리현황조회] 또는
- [전자민원 - 민원처리현황조회]를 클릭하면
조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한 인터넷 신고의 처리현황을 자동으로 조회
(조회기간 설정 가능 : 1주일, 15일, 1달, 3달 또는 기간 설정)

② '처리여부' 를 반드시 확인!

- '처리완료' 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 '미전송건' 인 경우, 저장만 되고 전송되지 않은 건으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반드시 '전송' 시켜야 합니다.
- '처리오류', '일부오류' 인 경우, 처리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은 '사용안내' 를 참고하세요!

③ 창구/EDI신고에 대한 처리현황조회도 가능(유형, 조회기간, 민원서식 등 선택)

- ※ 회원정보에 E-Mail를 등록하고 수신여부가 'Y' 인 경우, 처리일의 다음날에 처리결과를 메일로 송신하여 드립니다.

마. 문의전화

기관명	문의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77-1000	www.nhic.or.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관련(사업장 적용 및 징수 제외)	1588-1919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사업장적용 및 징수관련 문의	1588-0075	www.welco.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02)2240-1155~1160	www.4insure.or.kr

※ 민원서식작성 중 입력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고 포털사이트 이용 중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하면 정보연계센터로 문의하세요.

3. 연금보험료 납부편의 제도

가. 자동이체 납부

개요	· 사업장이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납부기한일(매월10일)에 자동 출금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개월 미납보험료 ※ 최초 출금 시에는 당월분 보험료만 출금됨(최초 출금 시 미납보험료를 포함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식에 별도 기재 요망)
이용방법	· 관할지사(방문/유선), 수납기관(방문),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자동이체마감일(통상16일)까지 신청하여야 다음달 10일부터 출금 가능 - 해지 및 계좌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함 예) 2009. 1.8 자동이체신청 : 2009.1월분(출금일 2009. 2.10)부터 적용 2009. 1.28 자동이체신청 : 2009.2월분(출금일 2009. 3.10)부터 적용 · 정기출금 시(매월 10일) 일부·미 출금된 경우 매월 25일에 추가 출금됨(연체금 포함 금액)
유의사항	· 통장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잔액한도 내에서 일부 출금되어 연체금 부담이 경감됨 ·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16:30) 입금된 금액이 출금 시까지 잔액 유지되어야 함 · 자동이체로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나 수납기관,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해지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나. 인터넷지로 납부

개 요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확인 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그 외 미납월은 지사에 유선신청하여 전자납부번호 발급받은 후 즉시 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 직전월을 미납 시 직전월 미 포함한 3개월 미납분
이용방법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가입 시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가입한 후 이용 · 납부가능요금메뉴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클릭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클릭 및 영수증 확인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
편리한 점	·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연금보험료 납부가능(09: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 불가 · 납부 영수증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3년간 보관됨

다. 인터넷뱅킹 납부

개 요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그 외 미납월은 지사에 유선신청하여 전자납부번호 발급받은 후 즉시 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 직전월을 미납 시 직전월 미 포함한 3개월 미납분
이용방법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뱅킹 메뉴 중 [공과금] - [국민연금] 선택 · 납부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한 내역을 조회 -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음(국번 없이1355를 통해 안내가능)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클릭 및 영수증 확인 ※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에는 납부 불가
이용가능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우체국,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편리한 점	·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능(09:00 ~ 22:00, 은행별 상이) - 인터넷뱅킹이 가능토록 금융기관에 사전 신청해야 함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 불가 · 납부영수증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3년간 보관됨

라. CD/ATM납부

개 요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보험료 고지내역을 조회 후 현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보험료(그 외 미납월은 지사에 유선신청하여 전자납부번호 발급받은 후 즉시 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 직전월을 미납 시 직전월 미 포함한 3개월 미납분
이용방법	· 자동화기기(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 선택 · 현금(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 “납부요금종류”메뉴에서 “국민연금”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가능한 내역을 조회 -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음(국번 없이1355를 통해 전자납부번호 안내가능) · 납부자명, 보험료금액 등 확인 후 납부 · “납부” 선택 후 납부여부 재확인 메시지 표출 · 납부결과 조회도 가능
이용가능 은행	· 전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로 납부가능(산업, BOA 이용불가) ※ 금융기관별 변동사항이 있음
편리한 점	· 고지서 없이 보험료 납부가능(07:00 ~ 22:00, 은행별 상이 ※연중무휴) ※ 우리 · 신한 · 한국씨티 ·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토 · 일 · 공휴일 수납 불가 · 타 은행 현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제주 · 전북 · 경남은행 불가)

마. 무고지서 납부

개 요	고지서분실 등의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납부방법
납부대상	당월분 및 미납분 ※ 자동이체대상월은 납부 불가
이용방법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국민연금 무고지서 납부를 신청 - 09:30~16:30(은행 영업시간 내) 해당 보험료 금액을 창구에 납부하고 영수증 수령
이용가능 은행 편리한 점	신한은행 납부를 희망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 신한은행을 거래하지 않는 사업장도 현금으로 직접 납부 가능

바. 가상계좌 납부

개 요	· 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보험료 금액을 이체시키는 납부방법
납부대상	· 납부를 희망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355(ARS 포함)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음 · 가상계좌번호는 국민은행, 농협 중에서 선택 ·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 보험료금액 입금 처리 - 최대 23:00까지 납부 가능(이용매체별로 이용가능 시간은 상이함) - 이체 방법에 따라 당·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이용가능시간	- 지사 : 09:00~18:00(근무일 업무시간 내) - 국번 없이 1355 : 09:00~20:00(근무일, 18:00이후에는 당월분 ARS 발급만 가능, 기타 시간대에는 당월분 포함된 기 발급내용만 조회 가능) - 수납홈페이지 신청/청구 메뉴이용 : 09:00~22:00(평일, 조회는 24시간 가능) ※ 납부기한일(매월 10일)에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
편리한 점	· 이용매체를 납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부금액 납부도 가능 · 국번 없이 1355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사. 입금전용계좌 납부

개 요	· 매월 수령하는 정기고지서 상의 금액이나, 지사에 유선 신청한 납부 희망월분 보험료를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별 입금 전용 계좌로 납부
납부대상	· 납부를 희망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사업장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 매월 발송되는 정기 고지서 상의 금액 또는 지사에 유선 신청한 납부 희망월 신청 금액 확인 ·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료금액 입금 처리 - 최대 23:00까지 납부 가능(각 은행별로 이용가능 시간은 상이함) - 이체 방법에 따라 당·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타행 수수료 포함 금액 이체) · 납부가능 금액 및 계좌 안내 이용가능시간 - 지사 : 09:00~18 : 00(근무일 업무시간 내) - 국번 없이 1355 : 09:00~20:00(근무일, 당월분만 조회 가능) - 수납홈페이지 신청/청구 메뉴이용 : 09:00~22:00(평일, 조회는 24시간 가능) ※ 납부기한일(매월 10일)에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
편리한 점	· 이용매체를 납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 1개월분에 대해서는 일부금액 납부도 가능 · 국번 없이 1355 또는 지사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납부 입금확인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음

아. 수납전용 홈페이지 이용 납부

개 요	연금보험료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수납전용 홈페이지 (http://anypay.nps.or.kr)
납부대상	납부를 희망하는 모든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 가능 자동차 사업장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절차 인터넷 주소창에 인터넷 납부서비스 도메인(http://anypay.nps.or.kr)을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지/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 희망월 선택 → 납부방법 선택 및 납부처리 → 납부결과 실시간 확인 납부방법 및 계좌 안내 이용가능시간 - 신한은행이체납부 :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이용 가능(신한은행 영업일 09:00~22:00까지 이용 가능)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공인인증서 등록)고객 이용 가능(은행 영업일 09:00~22:00까지 이용 가능) - 가상계좌납부 : 납부희망 월 선택은 공단 업무일 09:00~20:00까지 가능(납부처리는 고객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시간까지 가능) - 신용카드납부 : 국민·비씨·삼성·외환·신한·전북은행비자카드 보유자 이용 가능(연중 24시간 이용)
편리한 점	보험료 납부 영수증 : 납부즉시 영수증 자동 표출 및 '영수증보관함' 메뉴에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 및 인쇄 가능 이메일고지발송 서비스 : 종이고지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이메일 고지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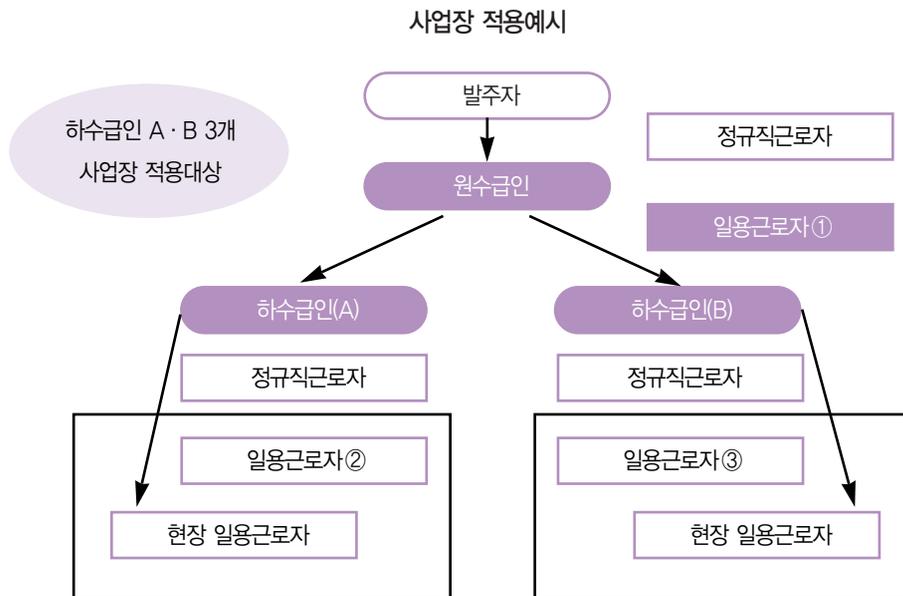


제6절 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 적용 기준

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1)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2)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 고용·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2. 근로자 적용기준

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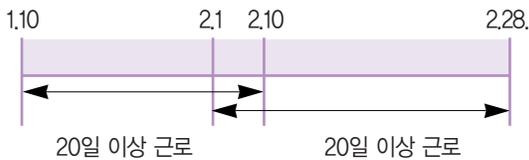
- (1)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 (2)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나.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1)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2)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일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 취득일 : 1. 10.

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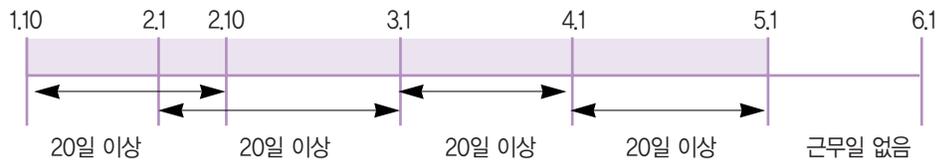
- 취득일 : 2.1

○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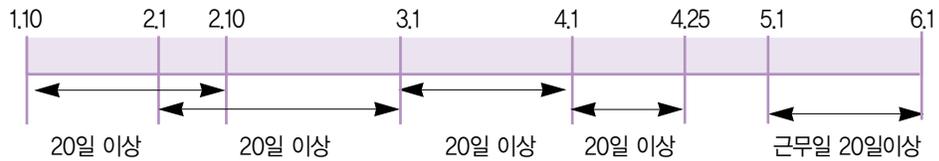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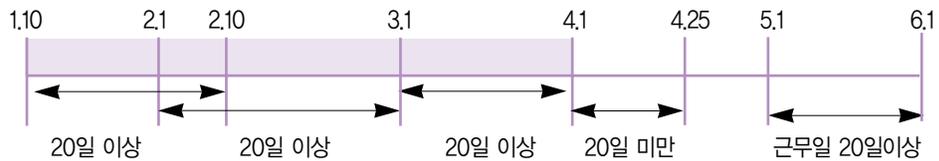
- 취득일 : 1.10. 상실일 : 5.1.

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 취득일 : 1.10. 계속근로 인정

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 근로를 하는 경우



- 취득일 : 1.10. 상실일 : 4.1.(또는 4.25.도 가능) 5.1. 재취득

3. 근로자 소득적용 기준

가. 적용대상

- (1)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나. 소득 적용기준

- (1) 자격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적용
 - 취득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2)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 사업장의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월의 실제 소득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소득적용 예시

“甲”현장	“乙”현장	“丙”현장
근로기간 : 2009.4.1~5.31 소득월액 : 4.1~4.30 180만원 5.1~5.31. 150만원	근로기간 : 2009.6.5~8.31 소득월액 : 6.5~6.30. 175만원 7.1~7.31 145만원 8.1~8.31 160만원	근로기간 : 2009.9.1~10.31 소득월액 : 9.1~9.30. 180만원 10.1~10.31 120만원
甲현장	취득/상실일 보험료납부 소득월액	2009. 4. 1. / 2009. 6. 1. 4~5월분(2개월) 2009. 4. 180만원 / 2009. 5. 150만원
乙현장	취득/상실일 보험료납부 소득월액	2009. 6. 5. / 2009. 9. 1. 취득월 납부 미 희망 7~8월분(2개월) 2009. 7. 145만원 2009. 8. 160만원
丙현장	취득/상실일 보험료납부 소득월액	2009. 9. 1. / 2009. 11. 1. 9~10월분(2개월) 2009. 9. 180만원 / 2009.10. 120만원

4.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가.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및 소득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나. 일괄 경정고지 ▶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 (1)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소득변동내역신고
 - 자격·보수변동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2)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 시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를 제출
 - 일괄 경정고지 방법 : '경정고지내역서' 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3)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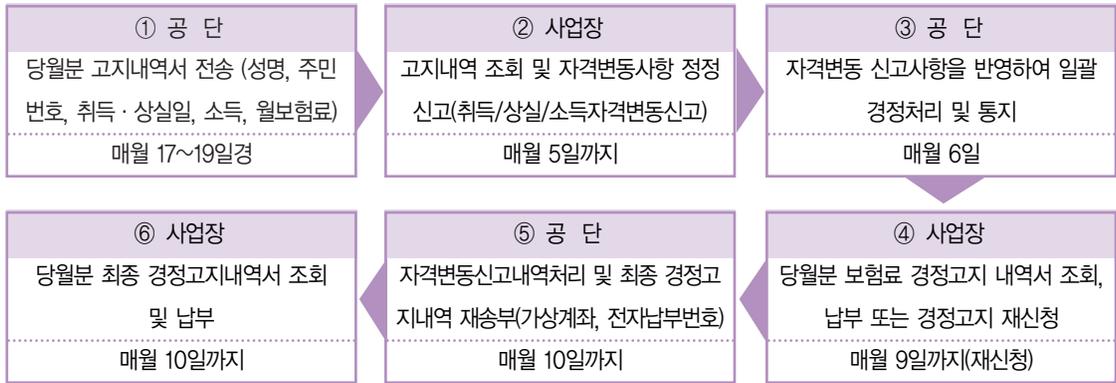
다. 수시 경정고지신청 ▶ 매월 9일까지

-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소득변동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국민연금 : EDI시스템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 납부

라.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 * 2009.1.1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2009.2.1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2009.2.1 이후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고지·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2009.3.10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 ☞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2009.2.1~2.5 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업장에 통지

5.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 납부확인서
 - EDI 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지사 방문, 팩스 신청 가능)
- 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②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제 III 장 권리구제 제도

제1절 심사청구



제1절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 스스로 처분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행정구제 절차

나. 심사청구의 대상(법 제108조)

자격·징수·급여업무에 관한 공단의 처분

- (1) “공단의 처분”이라 함은 공단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 (2)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3) 일반적인 제도안내, 가입내역 안내문,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수시독촉, 압류예고 통지,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안내, 제3자 가해에 대한 구상금 관련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이내

라. 심사청구 절차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 (1) 관련법규(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거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사
-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인용)
 - 각하 :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에 흠결이 있어 심사청구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공단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원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함)하여 청구 취지에 따라 공단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구성 등

-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공단 : 업무이사(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포함 10인)
 - 공단 : 업무이사(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각 2인 이상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이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공단은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법 제110조)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행정심판 절차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 이내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다만, 개정「행정소송법」의 시행(98.3.1)으로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Ⅳ장 국민연금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p> <p>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사업주나 사업 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 	<p style="text-align: center;">제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p>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p> <p>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p> <p>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p> <p>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p> <p>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p> <p>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p> <p>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p>	<p>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p> <p>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부동산 임대 소득 「소득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p>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p>제5조(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 달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p> <p>3.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p> <p>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p> <p>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p> <p>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 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1.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p> <p>2.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p> <p>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p> <p>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p> <p>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p> <p>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p>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p>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제 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p> <p>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p>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p> <p>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민연금가입자</p> <p>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p> <p>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p>	<p>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p>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국민연금가입자</p> <p>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p>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p> <p>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p>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p> <p>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p>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p> <p>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p>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p> <p>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p>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p>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p>	<p>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p>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p>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p>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 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p> <p>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p> <p>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제61조제2항·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p>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p> <p>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p>제14조(자격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先)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p> <p>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한다.</p> <p>제16조(가입자 증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p>	<p>제23조(사망의 추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p>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근로자가 법 제17조제3</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p>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p> <p>③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낼 수 있다.</p> <p>④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p>	<p>항 후단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p> <p>② 공단이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p>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p>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 	<p>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p>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월을 더한 월수</p> <p>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 <p>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p> <p>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기간으로 한다.</p> <p>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p>	<p>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p> <p>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p> <p>2. 파양(罷揚)된 경우</p> <p>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 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p> <p>제88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p> <p>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p> <p>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p> <p>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날에 낸 것으로 본다.</p> <p>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p> <p>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p>	<p>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p> <p>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소득이나 임업 소득 또는 어업 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자나.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내야 한다.</p> <p>②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의 청구로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지나지 아니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며, 돌려 줄 금액은 미리 낸 연금보험료 등 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한 지난 기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③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리 낸에 따라 연금보험료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에금 이자율의 12분의 1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만기 정기에금 이자율은 연금보험료의 선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p>연도의 이자율로 한다.</p> <p>제59조(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p>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p> <p>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p>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가입자: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기간(「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 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 	<p>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횟수,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보고, “가입기간”은</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른 복무 기간에 포함된 기간 및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한다)</p> <p>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서 계산한다.</p> <p>⑤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3조(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자에 대한 미납보험료 납부의 특례)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에 따른 납입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다.</p> <p>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p>	<p>“추납기간”으로 본다.</p> <p>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징수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을 받은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p>제95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p> <p>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96조(서류의 송달)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7조(연체금 등)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p> <p>②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p>	<p>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가산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p> <p>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 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1조(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p> <p>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p>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p>	<p>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1항 및 법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p> <p>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비 2.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 이자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p> <p>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p>	<p>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의무자 2.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p>③ 법 제100조 후단에 따라 과오납금에 더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되, 이자율은 계산기간 중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p> <p>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부당이득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p> <p>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p> <p>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0조(재심사청구) 제108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p> <p>6. 심사청구의 연월일</p> <p>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p> <p>8. 첨부 서류의 표시</p> <p>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p> <p>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p> <p>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변호사이거나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p>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p> <p>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p>	<p>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p> <p>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p>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 칙</p> <p>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 칙</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p>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p> <p>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p> <p>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p> <p>제118조(연금원부) 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p> <p>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121조(신고 등) 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25조(소득축소·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p>	<p>제110조(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p>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p>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p>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13조(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26조제2항제1호에서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p>

제V장 서 식

I. 자격관리서식

II. 징수관리서식



목 록

I. 자격관련 서식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29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133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3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3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5.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41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서	143
7.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145
8. 자격확인청구서	147
9. 심사청구서	149
10.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51
11.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가입자용)	153
II. 납부관련 서식	
12. 자동이체 신청서	155
13.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15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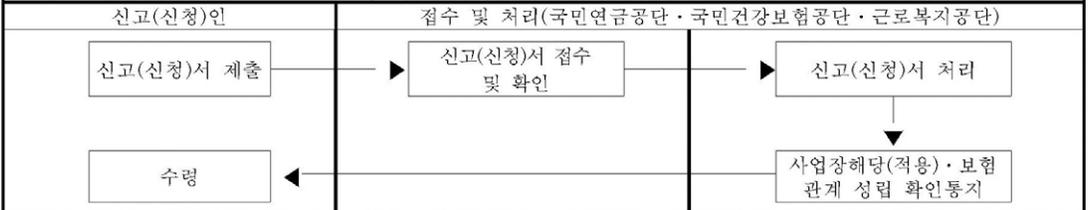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주거래 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민연금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건설 현장 사업 기간 ~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e-mail 고지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 등록번호	계좌번호
	단위사업장수 (지점,대리점,공장)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e-mail 고지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수신자 성명	우편고지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업종	
개산보험료 신고	대규모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 제외	정수특례 제외신청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 제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type="checkbox"/> 유기(사업기간: -)		*성립일	
	개산보험료 신고	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input type="checkbox"/> 분납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제1쪽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제1쪽 뒷면)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 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 공통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확인)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
| 공통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4. "주거래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EDI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으시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계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적습니다. 5.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6.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4.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고용보험 | <p>※ "(총)피보험자수"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예 :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원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원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개산보험료 신고란을 적은 사업장(징수특례적용제의 신청사업장 포함)은 별도의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보험도 동일함). 6. "산정기간"란은 성립일부터 연도말(유기사업은 해당 연도의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고, "임금총액"란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적으며, "분납납부"란은 분납·일시납 여부를 선택(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및 6개월 미만 유기사업은 분납 불가)하고(이상 산재보험도 동일함), "징수특례 제외신청"란은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적용제의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도 동일함). |
| 산재보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원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업주는 매년 3월말(연도 중 신규적용 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 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주(건설업·별목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업일자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 선 안은 공단에서 적으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제3쪽)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업장 (2)	명칭						
	소재지		(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3)	명칭						
	소재지		(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4)	명칭						
	소재지		(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5)	명칭						
	소재지		(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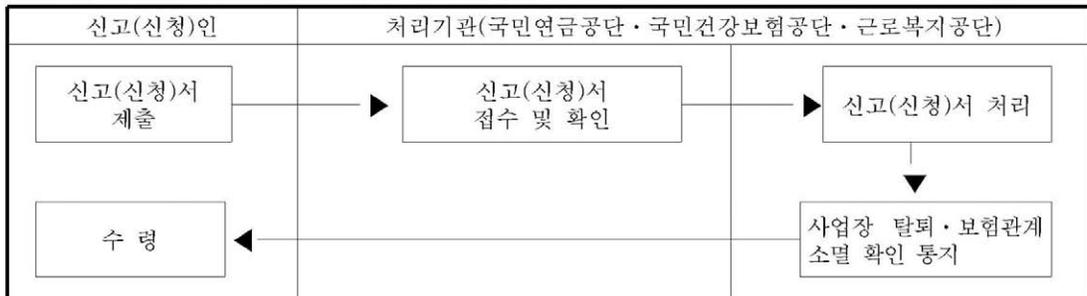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국민연금□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통·폐합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고용·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없이 1년경과		
	사유발생일자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수		* 소멸일자	
	확정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연간 합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연간 합계)
	명	원	명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확정신고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사본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이 신고(신청)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 · 폐업사실 증명원 1부 2.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 · 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3.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십시오. 3. 신고사유는 한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으십시오. 4.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5.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2. “통 · 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징수특례적용사업장은 제외). ※ 확정보험료를 위 기한까지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보험료 신고”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소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모든 근로자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소멸연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말하며, 임금총액은 해당 연도(소멸연도)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3. “확정보험료 신고”란을 적은 경우 별도의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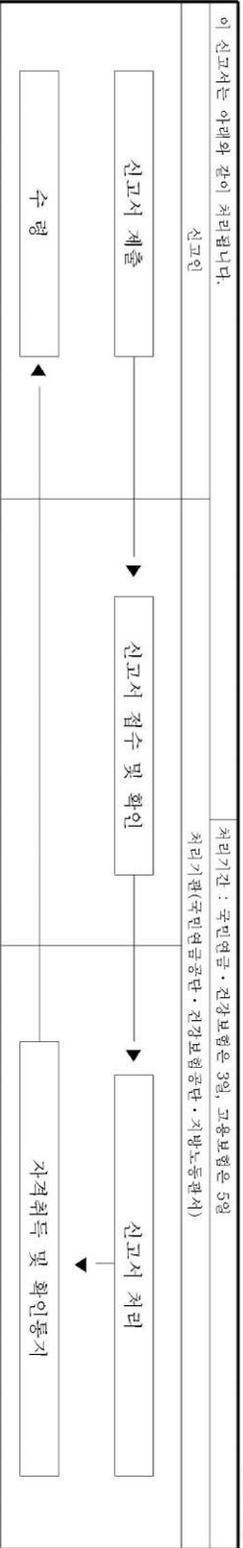
(제1쪽 앞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과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단위사업장명칭		하수금인 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금인에 한함)				
성명		소계기 전화번호		우편번호(-)		FAX번호				휴대전화				
1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고용보험						
주인(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1.정규 2.비정규	소득월 액(원)	취득월 납부액 1회당 2회 해당	직격 취득 번호	직격 취득 번호	장예인·국가공성이 자	보합보 감면 부호	공무원, 교직원 회계명 직종명 /부호	직격 취득 번호	학력	직종	주 소 근로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 없음 □)		□고용보험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 : _____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 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지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접수료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치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치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p>【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만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원부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 【특수직종 부호】 1. 평일 2. 부원</p> <p>【자격취득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거부양자 상설 07. 직장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상이자 상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월가입</p> <p>【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간역) 12. 해외근무(간역) 21. 원역근로 22. 상근예비역(현역임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사할수용(포도소) 32. 사할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립정) 42. 도서벽지(국지) 81. 유직</p> <p>【장애등급 및 국가유공상(기타) 부호】 1. 직제장애인 2. 직제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장애인 7. 발달장애인 8. 장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장애인 14. 장부·요수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상이자</p>
건강보험	<p>【직종 부호】 별기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p> <p>【의력 부호】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이상</p>

<기요령 및 유의사항 등>

고용보험	<p>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면, 성명 및 주민(의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의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별)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에는 해당사항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이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행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과업·용역·호출·특임도급·계약·제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상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개인지별 해당 사항(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 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5. 의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제국적(의국인등록증 기재국적)을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제의국민의 “제류지역”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p>
국민연금	<p>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평일법」 제2조에 따른 평일근로자인 경우 “평일” 또는 “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근로직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월의 일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p>
건강보험	<p>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면,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p>
고용보험	<p>1.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권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p>

【별기】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p>관리적</p> <p>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부 관리 관리적 013 사회서비스 관리 관리적 014 건설, 생산, 정보통신 관련 관리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적 016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관리적 017 동맹이업 관련 관리적</p>	<p>경영·회계·사무 관리적</p> <p>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영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리 서비스직 025 미서 및 사무보조원</p>	<p>금융·보험 관리적</p> <p>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p>	<p>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리적</p> <p>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p>	<p>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적</p> <p>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관련 사무직 053 경찰·소방·교도 관리적</p>	<p>보건·의료 관리적</p> <p>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 의료 관리적</p>	<p>사회복지 및 종교 관리적</p> <p>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관리적</p>	<p>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리적</p> <p>081 작가 및 출판 관리적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리적 085 디자인 관리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p>	<p>운전 및 운송 관리적</p> <p>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계 관리적 092 철도·기차철기 관사 및 관리적 093 자동차운전 관리적 094 크레인 및 기계운전 관리적 095 운송관련 단속직</p>	<p>영업 및 판매 관리적</p> <p>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속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p>	<p>경비 및 청소 관리적</p> <p>111 경비 관리적 112 청소 및 수납부 관리적 113 계기점검, 수검 및 주차관리 관리적</p>	<p>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리적</p> <p>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강제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직</p>	<p>제도관련직 (금융·유리·점토·시멘트)</p> <p>161 금융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리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재물)</p>	<p>농림어업 관련직</p> <p>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리적 233 임업 관리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속직</p>	<p>건설 관리적</p> <p>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축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목공 및 조적원 145 건축안전성 관리적 146 건설기계 운전원 147 건설기계 운전원 148 토목 및 평면관리적 149 건설 및 평면관련 단속노무자</p>	<p>기계 관리적</p> <p>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p>	<p>정보통신 관리적</p> <p>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적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p>	<p>화학 관리적</p> <p>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p>	<p>식품·인쇄·복제·가구·공예 및 생년단속직</p> <p>211 식품공학 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리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리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가)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복제·필름·용이기술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건반해체·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린 단속직</p>	<p>직업기술 관련직</p> <p>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적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p>	<p>직업기술 관련직</p> <p>211 식품공학 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리적</p>	<p>직업기술 관련직</p> <p>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리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가)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복제·필름·용이기술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건반해체·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린 단속직</p>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제3쪽)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예인 · 국가유공상이자	
			중번호	등급
피 부 양 자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고인(사용자) :
 기재 요령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허, 형제 ·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예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는 장예 중번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기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수령		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 "포시란은 적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 의 자격득일인 경일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자격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정출(통·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 1. 연금수급권자 16. 월정국·연금가입 19. 제유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제유자격(외국인) 2. 사용자는 소재발령 등으로 상설자에게 통지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상실일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로서 건강보험적용예치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 : 01, 사망 : 02, 의료급여수급권자 : 04, 국가유공상이자 : 10, 기타(외국인당연직용제외) 등 : 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적고,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차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규칙·보수·세비·인근·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기목 및 과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 연상금, 연금,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기목 및 과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56호에 따른 근로소득연결정수영수증의 ⑥제외 ⑦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⑩기간근로소득과 ⑪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된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3. "건강보험 가입주" - 해당사업장 사업주와 부동가입대상자의 합계 (총가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할 금액)을 적습니다. 4. "퇴직 전 3월간 평균보수" - 신청 시 유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년도(단도 적용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가입자격적격취득·변동신고서)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자사유코드> * 상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차용일 12. 결혼·출산·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전별·보살·노력 등 14. 공제연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과세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적절 기재)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배임·부실·단선(정) 또는 23. 경영실 폐업에 의한 해고 24. 휴업·임금제별 회사이정(근로조건 변동)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5. 기타 회사(정) 또는 26. 공제연고 27. 경영실 폐업에 의한 해고 28. 휴업·임금제별 회사이정(근로조건 변동)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종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사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하위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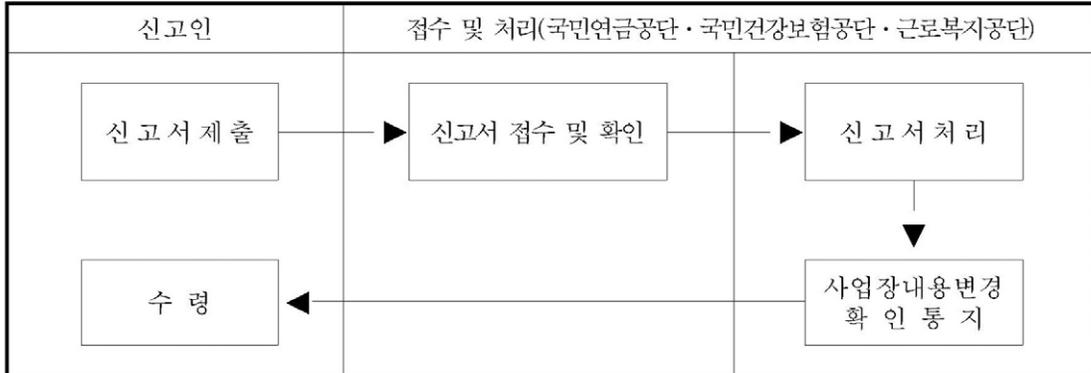
(앞 면)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구분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진	변경후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기간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이 신고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사항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 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6.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9.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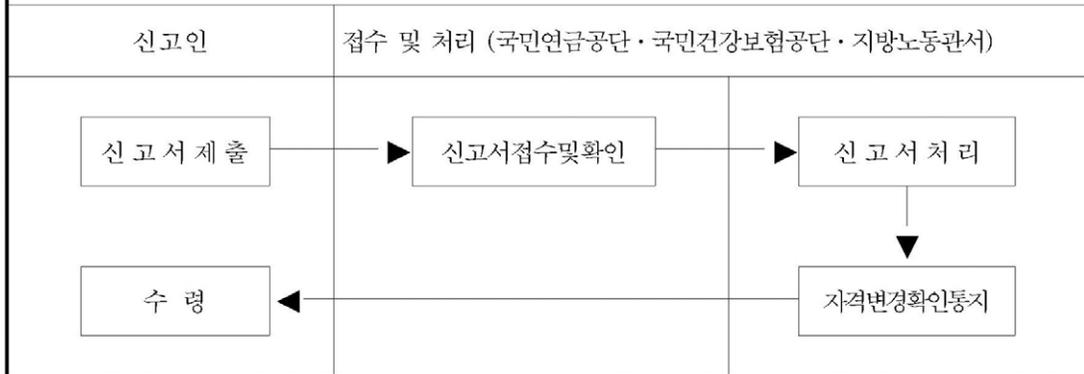
(앞 면)

<p>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p> <p>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정함)	
		명칭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p>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p>[내용변경부호]</p> <p>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p>						
<p>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p>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하십시오.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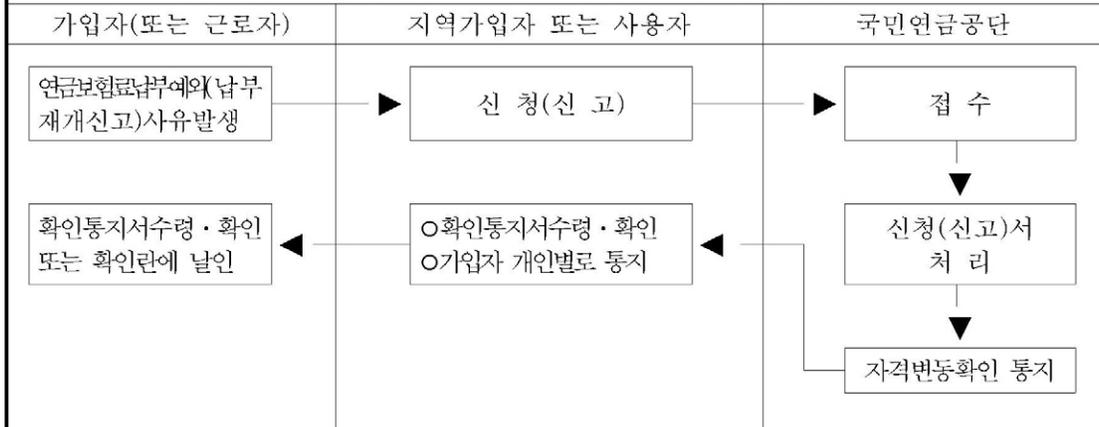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3일	
연금보험료(□납부 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예외 사유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회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특수종부호
전화번호	자택	회 사		휴대전화	E-mail			
e-mail 고지	신청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사업장에서 신청(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전 화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가입자 확인
		예외 사유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회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인)
	-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인)
	-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인)
	-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인)
	-					<input type="checkbox"/> 회망 <input type="checkbox"/> 미회망		(인)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접수인	신청(신고)일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예외 사유부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등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뒷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구비서류>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소득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재개소득신고서”란에 “V”표를 하십시오.
2. “납부재개소득신고(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 예외신청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앞면의 1부터 12까지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 및 등급”란에는 납부예외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과 등급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9.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10.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14일

자격확인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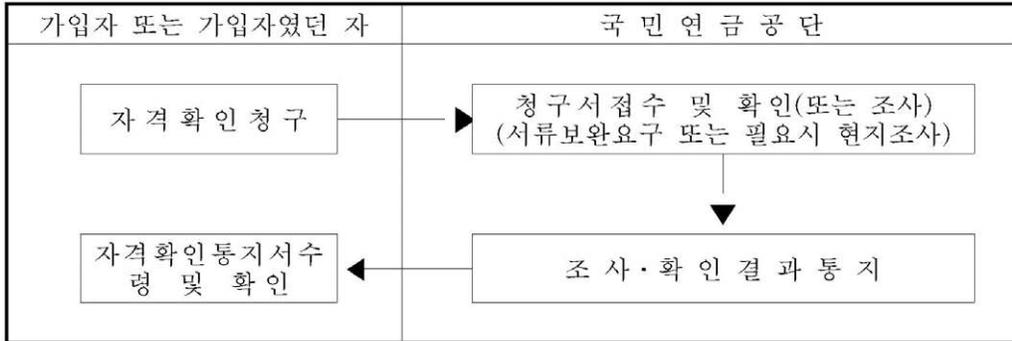
확인 청구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 현재자격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였던 자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 격 확 인 청 구 내 역					
자격확인청구사유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신고누락 <input type="checkbox"/>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종별변동				
근무 중인(하였던) 사업장	명칭	사용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 및 신고 누락 현황	근무기간	누락기간	누락사유		
	-	-			
기타참고사항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인	청구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31315-03411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란에 “√”표를 하십시오.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 누락”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자격취득·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별변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 종별변동”란에 “√”표를 하십시오.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누락기간과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 등)”를 적으십시오.
6.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6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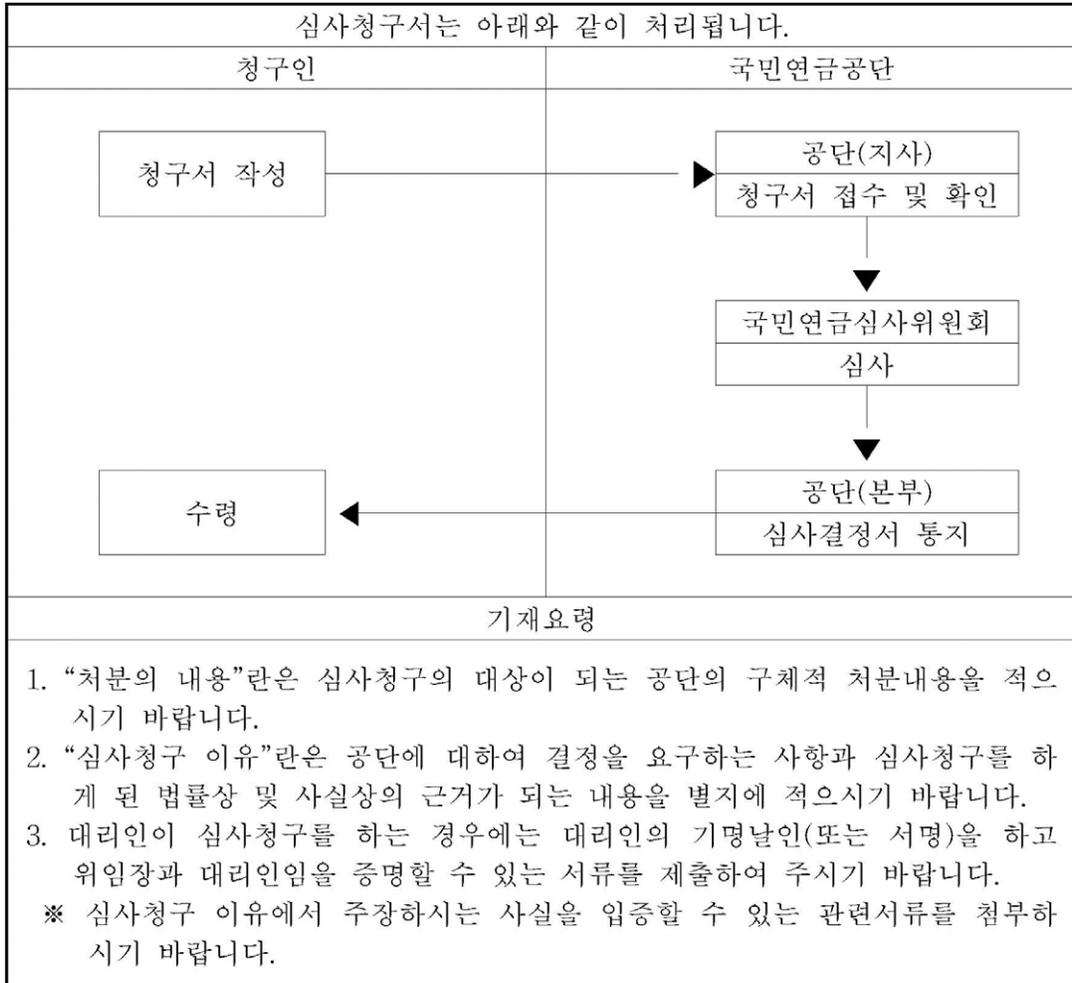
심사청구서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날		처분을 한 곳(지사)		
심사청구 이유	별지					
						수수료
						없음
<p>「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일 :</p>						
접수인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귀중					

31315-02611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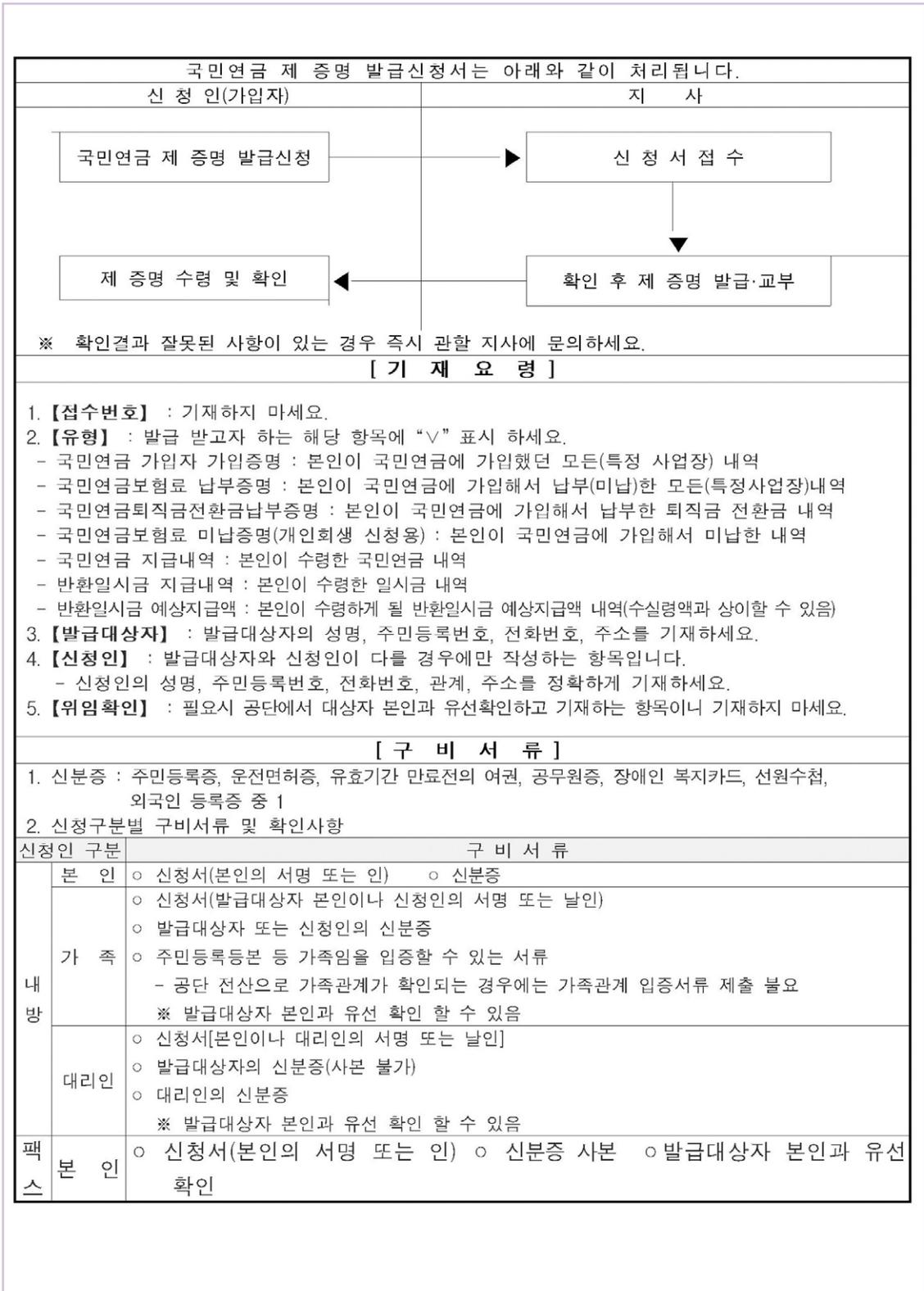
(뒷 면)



국민연금 제 증명 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사용자)	지 사														
국민연금 제 증명 발급신청	신 청 서 접 수														
제 증명 수령 및 확인	확인 후 제 증명 발급·교부														
<p>※ 확인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기 재 요 령]</p> <p>1.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p> <p>2. 【유형】 : 발급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 표시 하세요.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당해 사업장의 전체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당해 사업장의 특정 가입자의 가입내역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 사업장 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증명 :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 연도별 보험료 납부내역 - 사업장 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 :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 월별 보험료 납부내역 - 0000년00월분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 : 당해 사업장의 해당월분 보험료 개인별 고지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 납부증명 : 당해 사업장가입자 전체 혹은 특정가입자 납부내역</p> <p>3. 【신청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하세요. - 신청인(대리인(업무대행자))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장과의 관계, 전화번호, FAX 번호, 휴대폰번호, E-Mail주소, 업무대행업체명, 업무대행자명 등 해당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p> <p>4. 【유선확인】 : 필요시 공단에서 해당사업장과 유선확인하고 기재하는 항목이니 기재하지 마세요.</p> <p>5. 【용도】 : 국민연금 제 증명의 사용용도를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관명을 기재하세요.</p> <p>6. 【발급해당구간】, 【신청대상】, 【출력순서】, 【출력선택】 : 해당 항목에 “√” 표시하세요.</p> <p>7. 【개별발급대상자】 : 신청대상에서 개별발급대상자를 선택할 경우 해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p> <p>8. 【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사용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비 서 류]</p> <p>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 등록증 중 1</p> <p>2. 신청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 구분</th> <th style="width: 80%;">구 비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자</td> <td>○ 신청서(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 ○ 신분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입종인 자</td> <td>○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리인(업무 대행자)</td> <td>○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공단전산에 등록된 업체(유선확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탈퇴사업장 사용자의 대리인</td> <td>○ 신청서(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시 해당 사용자에게 유선확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팩 스</td> <td>○ 신청서(사용자 직인 또는 사용인감)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팩스 신청 불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 편</td> <td>○ 문서로 요청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우편 신청 불가</td> </tr> </tbody> </table>		신청인 구분	구 비 서 류	사용자	○ 신청서(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 ○ 신분증	가입종인 자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업무 대행자)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공단전산에 등록된 업체(유선확인)	탈퇴사업장 사용자의 대리인	○ 신청서(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시 해당 사용자에게 유선확인	팩 스	○ 신청서(사용자 직인 또는 사용인감)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팩스 신청 불가	우 편	○ 문서로 요청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우편 신청 불가
신청인 구분	구 비 서 류														
사용자	○ 신청서(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 ○ 신분증														
가입종인 자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업무 대행자)	○ 신청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공단전산에 등록된 업체(유선확인)														
탈퇴사업장 사용자의 대리인	○ 신청서(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시 해당 사용자에게 유선확인														
팩 스	○ 신청서(사용자 직인 또는 사용인감) ○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팩스 신청 불가														
우 편	○ 문서로 요청 ※ 해당 사업장에 유선 확인 ※ 탈퇴사업장은 우편 신청 불가														

[민원사무처리예규 별지 제1의6호 서식]

* 접수번호				결 재	차 장	팀 장	지사장
《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세요. 》							
국민연금 제 증명 발급 신청서 (가 입 자 용)				처 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유 형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input type="checkbox"/> 반환일시금 예상지급액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input type="checkbox"/>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증명(개인회생 신청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납부증명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지급내역						
발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용 도	<input type="checkbox"/> 확인용 <input type="checkbox"/> 제출용(타기관명 :)						
* 【신청인】 항목은 발급대상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작성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					
	주 소						
	위임확인	<※필요시 공단에서 발급대상자 본인과 유선확인하고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제 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접 수 인	신 청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 사항	1. 국민연금 제 증명 자료는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제 증명을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선으로 발급대상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팩스를 통한 제 증명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분만 출력됩니다.						



[국민연금자격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8. 1. 23>

(앞 면)

* 접수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지 역		결		차 장	팀 장	지사장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처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가입자)	명칭(성명)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FAX번호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가입자 변경부호] 3. 기준소득월액 4. 취득일 5. 취득사유 6. 상실일 7. 상실사유 8. 납부재개예정일 10. 납부예외일 11. 국적 15. 체류자격 16. 납부예외사유 17. 납부재개사유								
[지역 가입자 변경부호] 4. 취득일 5. 취득사유 6. 상실일 7. 상실사유 8. 납부예외일 9. 납부예외사유 10. 납부재개일 11. 납부재개사유 12. 납부재개예정일 15. 업종 16. 전화번호 20. 세대주내역 21. 국적 24. 종별변경 25. 재직사업장관리번호 26. 직업코드 27. 탈퇴예정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 수 인				신고인(사용자·가입자)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6장 부록

부록 I 지사연락처 및 관할구역

부록 II 예상연금월액표



지사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사명	주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본부	서울 송파구 교통공원길13 (신천동7-16) 국민연금회관	02)2240-1114	02)424-9209	
종로·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33) 영풍빌딩 6층	02)397-9500	02)3485-2700~3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4	02)920-0502~6	02)3485-2710~9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5 (수유동191-35) 우성빌딩 7,8층	02)901-2802~6	02)3485-2720~4	성북구, 강북구
도봉·노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길 129 (창동9-3) 국민은행 5,6층	02)2211-2803~6	02)3485-2730~9	도봉구, 노원구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성길 71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3층	02)3408-6600~4	02)3485-2745~9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54 (불광동272-51) 대한생명 3층	02)350-5501~5	02)3485-2830~3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66 (갈월동98-38) 청룡빌딩 1,2층	02)6220-2202~5	02)3485-2867~8	용산구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길 197 (공덕동456) 르네상스타워 3층	02)2176-9800~8	02)3485-2840~9	마포구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582 (마두동1010) KT프라자 2층	031)920-5410	031)303-2000	고양시
파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89-5 굿닥터스빌딩6층	031)956-3612	031)303-2223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의정부동493-1) 삼성생명2층	031)828-3601~2	031)303-2180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중앙로96 (송우리726-84) 송우웰빙타운5층	031)540-8011~3	031)544-0040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7 (교문동 245-8) 구리노블하임빌딩 5층	031)550-5863, 5818~9	031)303-2023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강남신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4층	02)3416-3054	02)3485-2774	신사동, 논현동, 압구 정동, 청담동, 삼성동
강남역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대치동890-20) KTF빌딩 5층	02)2186-4060 ~61,75	02)3485-2883~3	대치, 역삼, 도곡,개포, 포이, 일원, 수서, 자곡, 세곡, 율현동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1 (신천동7-23) 대한제당2층	02)3433-5701~4	02)3485-2750~9	송파구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강동·하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40 (성내동199-10) 강동웨딩문화센터 제일은행 8층	02)480-8950~2	02)3485-2760~9	강동구, 하남시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96 (서초동1321-2) 강남빌딩4층	02)3415-0301~2	02)3485-2780~9	서초구
관악· 동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제11동 1659-5 자티전자빌딩 2,4층	02)6934-2001~2	02)3485-2790~9	관악구, 동작구
구로·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십리길 89 (가산동60-15) 리더스타워 2층	02)2085-1400~4	02)3485-2800~9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물포길 274 (당산동4가93-1) 동양웨딩홀5층	02)2629-2301~4	02)3485-2810~9	영등포구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로 390 (등촌3동673-5) 화인빌딩5층	02)2086-7150~5	02)3485-2820	강서구
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 -3 (목동923-12) 서울이동통신17층	02)6345-9001~4	02)3485-2857~8	양천구
춘천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 (은의동513)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3층	033)259-7745-9	033)249-8163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강릉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4길 20 (포남동892-7) 국민연금강릉회관	033)640-9313~7 033)640-9370~7	033)249-8101~7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삼척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77 (교동207-1) 국민연금삼척회관	033)571-2123	033)249-8123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원주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3길 22 (단계동862) 신희중앙회1층	033)749-8401~4	033)744-9275	원주시, 횡성군, 평창 군, 영월군, 정선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말레니엄길 223 (인계동1038-1) 삼성화재8층	031)229-4096	031)303-2082	수원시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2 쥬네브 스타월드(C동) 9층	031)288-1301~3	031)281-0015	용인시
화성·오산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06-1 금강빌딩 5층	031)229-6020~31	031)303-2263	화성시, 오산시
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로 374 (관양동1451번지) 캠프리자빌딩5층	031)420-2001~2	031)303-2143	안양시, 과천시
군포·의왕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11 (금정동 847-2)·동영센터컬타타워5층	031)390-8002	031)303-2040	군포시, 의왕시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우로 170 (야탑동344-1) 코리아디자인센터(4층)	031)778-0392	031)303-2063/7	성남시
이천	경기도 이천시 복천로 51 (중리동218-2) 하나빌딩 5층	031)630-7937	031)303-2203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평택	경기도 평택시 역전로 26 (평택동 32-2) 삼성생명 5층	031)659-0810~9	031)303-2241	평택시, 안성시
안산	경기도 안산시 광덕로 173 (고잔동523-3) 삼성화재 안산사옥2층	031)481-7701~2	031)303-2120	안산시
광명	경기도 광명시 중앙로15 (철산동250) 융창상호저축은행3층	02)2610-2820~3	02)3485-2852	광명시
시흥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46번지 (정왕동1726-5) 한국산업은행5층	031)488-2701~4	031)434-3645	시흥시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6 (심곡본동671-1) 대신증권6층	032)610-2332~9	032)211-7083	부천시
남동·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데오거리 78 (구월동1462-1) 국민연금인천화관3층	032)451-0810	032)211-7063~5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288 (심곡동303-1) 새터빌딩3층	032)560-0401~5	032)211-7040~7	서구, 강화군, 김포시
남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29 (사동22-22) 흥국생명 1,2층	032)770-3560	032)211-7004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계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115 (부평동529-15) 대한생명 부평사옥15층	032) 500-8150, 500-8110	032)211-7023~4	부평구, 계양구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화관 4층	042)480-4886	042)388-2003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155 (오류동188-15) 사학연금화관9층	042)720-4141~3	042)388-2023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길 4 (종리동122-1) 조은크리닉빌딩4층	042)670-1020~6	042)388-2040~6	대덕구, 유성구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길 14 (서문동14-1) 국민연금 청주화관	043)251-5114	043)901-5000~5	청주시, 청원군, 진천 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아리 288 하나로빌딩 3,4층	043)730-2710~2	043)901-5022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5-1 국민연금 충주화관	043)840-0735	043)901-5041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공주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1-2 금성빌딩 1,2층	041)850-3822~6	041)901-5003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 (신부동467-1) 대한생명빌딩 8층	041)550-8902~5	041)901-5040	천안시, 아산시
홍성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릉빌딩 6,7층	041)630-8110~3	041)901-5060	서산시, 태안군, 홍성 군, 예산군, 당진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25 (동대동576-1) 국민연금 보령회관	041)930-6601~3	041)931-1036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590 (우산동1582-4)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062)958-2052	062)455-3003	서구, 광산구, 니주시, 영광군
동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대인동7-12) 광주은행8층	062)230-0702~4	062)232-5560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91 (유동33-43) 송강빌딩 2,3층	062)520-8130~6	062)455-3043	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월드컵로 408 (서신동769) 국민연금전북회관3층	063)270-5303	063)900-3040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효열비길 66 (주현동116-23) 국민연금 익산회관	063)850-0316	063)900-3023	익산시, 군산시
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319-42 국민연금정읍회관	063)530-5801~2	063)531-3277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370 (동충동 401) 국민연금 남원회관	063)620-3410~2	063)625-9616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692-7 국민연금 순천회관	061)729-3002	061)900-7023	순천시, 구례군, 고흥 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동초교앞길 34 (공화동1094) 국민연금여수회관	061)660-5530~7	061)900-7043 061)666-6723	여수시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중앙로 232 (호남동 129) KT목포사옥 6층	061)240-3344	061)900-7003	목포시, 무안군, 신안 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392-7 국민연금해남회관	(061)530-2321	(061)900-7064	해남군, 완도군, 진도 군, 강진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청사1로 5 (도남동 664-4) 국민연금 제주회관	064)720-4001~2	064)720-5700~3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로 58 (이곡동1198-5) 국민연금 대구회관	053)589-4516~7	053)288-7040	달서구, 성주군
서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103번지 KT북대구지점 1,2층	053)380-3002~3	053)288-7081~4	서구, 북구
동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188 (덕산동110) 삼성금융프라자8층	053)430-7831~7	053)288-7063	동구, 중구
대구수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7 (범어동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10층	053)750-9111~8	053)288-7003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달성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10 (대명동2010-1) 우체국보험대구회관 6층	053)470-1511~4	053)228-7020	남구, 달성군, 고령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회랑로 50 (성동동386-6) KT경주지점4층	054)770-3920~6	054)613-5003	경주시, 영천시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주) KT포항지사 8층	054)280-0831	054)613-5103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58 (옥동617-6) 국민연금공단 안동회관	054)850-9010~3	054)613-5060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로 26 (영주동555-3) 영주상공회의소 2,3,4층	054)639-8011-15	054)613-5081	영주시, 봉화군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915-1 국민연금문경회관	054)550-3320, 3322-6,8	054)613-5043 ,554-3362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로3 (송정동 56) 굿모닝신한증권 5층	054)450-8501~4	054)457-0386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4층	051)797-7061~7	051)910-8043~4	부산진구, 연제구
중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로 396 (초량동1193-1) 흥국생명빌딩 9,10층	051)660-3203~4	051)910-8103~4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로 639 (하단동528-11) 삼성전자빌딩10층	051)290-3541~7	051)910-8083~4	사하구, 서구
북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410 (덕천동403-2) 무궁화빌딩 8,9층	051)603-1101~4	051)910-8060	강서구, 사상구, 북구
동래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로 38 (명륜동510-6) 대한생명8층	051)550-7500~5	051)910-8020	동래구, 금정구
남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17 (대연동73-1) 태강프라자빌딩8,9층	051)610-6304~5	051)910-8003~4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4 (신정동649-7) 대한생명빌딩 4층	052)226-2214 ~2220	052)930-7023	남구, 울주군
동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63 (학산동47-20) 삼성전자울산사옥 1,2층	052)290-6130	052)930-7003	중구, 동구, 북구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 (신월동101-1) 국민연금 창원회관	055)278-9001~2	055)600-8300	창원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	경상남도 마산시 3.15 의거길2490 (석전동 224-5) 대한생명빌딩11층	055)290-4602~5	055)600-8241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830-1 부원동우체국 4층	055)320-8348	055)600-8223	김해시, 밀양시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길179 (죽림리 1585-63) 국민연금통영회관	055)650-8501~5	055)641-7974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사명	주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로 251 (강남동 25-2) 알리안츠생명빌딩 2,3층	055)760-0601~4	055)761-7965	진주시, 사천시, 남해 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14 국민연금거창회관	055)940-4515	055)600-820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9-2 골든세븐 7층	055)371-1501~4	055)600-8263~4	양산시

【부록 2】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순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년)					
			10(50%)	15(75%)	20(100%)	25(100%)	30(100%)	40(100%)
1	220,000	19,800	113,210	165,380	214,57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20,700	113,810	166,250	215,71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21,600	114,410	167,120	216,84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2,500	115,000	167,990	217,97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3,400	115,600	168,860	219,10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4,300	116,200	169,730	220,230	268,900	270,000	270,000
7	290,000	26,100	117,390	171,480	222,490	271,660	290,000	290,000
8	310,000	27,900	118,580	173,220	224,760	274,430	310,000	310,000
9	340,000	30,600	120,370	175,840	228,150	278,570	328,990	340,000
10	370,000	33,300	122,170	178,450	231,540	282,710	333,890	370,000
11	400,000	36,000	123,960	181,070	234,940	286,860	338,780	400,000
12	440,000	39,600	126,340	184,560	239,460	292,380	345,300	440,000
13	480,000	43,200	128,730	188,040	243,990	297,910	351,830	459,670
14	520,000	46,800	131,120	191,530	248,510	303,430	358,350	468,200
15	570,000	51,300	134,100	195,890	254,170	310,340	366,510	478,850
16	620,000	55,800	137,090	200,250	259,820	317,250	374,670	489,510
17	670,000	60,300	140,070	204,610	265,480	324,150	382,820	500,160
18	730,000	65,700	143,650	209,840	272,270	332,440	392,610	512,950
19	790,000	71,100	147,230	215,070	279,060	340,730	402,400	525,740
20	850,000	76,500	150,820	220,300	285,840	349,010	412,190	538,530
21	920,000	82,800	154,990	226,410	293,760	358,680	423,600	553,450
22	990,000	89,100	159,170	232,510	301,680	368,350	435,020	568,360
23	1,060,000	95,400	163,350	238,610	309,600	378,020	446,440	583,280
24	1,130,000	101,700	167,530	244,720	317,520	387,690	457,860	598,200
25	1,210,000	108,900	172,300	251,690	326,570	398,740	470,910	615,250
26	1,290,000	116,100	177,080	258,670	335,620	409,790	483,960	632,300
27	1,380,000	124,200	182,450	266,510	345,800	422,220	498,640	651,480
28	1,470,000	132,300	187,820	274,360	355,980	434,650	513,320	670,660
29	1,560,000	140,400	193,190	282,210	366,160	447,080	528,000	689,850
30	1,660,000	149,400	199,160	290,930	377,470	460,900	544,320	711,160
31	1,760,000	158,400	205,130	299,640	388,790	474,710	560,630	732,470
32	1,860,000	167,400	211,100	308,360	400,100	488,520	576,940	753,780
33	1,970,000	177,300	217,670	317,950	412,540	503,710	594,890	777,230

순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년)					
			10(50%)	15(75%)	20(100%)	25(100%)	30(100%)	40(100%)
34	2,080,000	187,200	224,230	327,540	424,990	518,910	612,830	800,670
35	2,190,000	197,100	230,800	337,130	437,430	534,100	630,770	824,110
36	2,300,000	207,000	237,360	346,730	449,870	549,300	648,720	847,560
37	2,420,000	217,800	244,520	357,190	463,450	565,870	668,290	873,130
38	2,540,000	228,600	251,690	367,650	477,020	582,450	687,870	898,710
39	2,670,000	240,300	259,450	378,980	491,730	600,400	709,070	926,410
40	2,800,000	252,000	267,210	390,320	506,440	618,360	730,280	954,120
41	2,940,000	264,600	275,560	402,530	522,270	637,700	753,120	983,960
42	3,080,000	277,200	283,920	414,730	538,110	657,030	775,950	1,013,800
43	3,230,000	290,700	292,870	427,810	555,080	677,750	800,420	1,045,760
44	3,380,000	304,200	301,820	440,890	572,050	698,470	824,890	1,077,730
45	3,600,000	324,000	314,960	460,070	596,940	728,860	860,780	1,124,620

- 주) 1.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08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 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등급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B값)	연금보험료(9%)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일시보상금)
1	220,000	19,800	220,000	189,680	142,260	6,401,820
2	230,000	20,700	230,000	190,680	143,010	6,435,570
3	240,000	21,600	239,600	191,680	143,760	6,469,320
4	250,000	22,500	240,850	192,680	144,510	6,503,070
5	260,000	23,400	242,100	193,680	145,260	6,536,820
6	270,000	24,300	243,350	194,680	146,010	6,570,570
7	290,000	26,100	245,850	196,680	147,510	6,638,070
8	310,000	27,900	248,350	198,680	149,010	6,705,570
9	340,000	30,600	252,100	201,680	151,260	6,806,820
10	370,000	33,300	255,850	204,680	153,510	6,908,070
11	400,000	36,000	259,600	207,680	155,760	7,009,320
12	440,000	39,600	264,600	211,680	158,760	7,144,320
13	480,000	43,200	269,600	215,680	161,760	7,279,320
14	520,000	46,800	274,600	219,680	164,760	7,414,320
15	570,000	51,300	280,850	224,680	168,510	7,583,070
16	620,000	55,800	287,100	229,680	172,260	7,751,820
17	670,000	60,300	293,350	234,680	176,010	7,920,570
18	730,000	65,700	300,850	240,680	180,510	8,123,070
19	790,000	71,100	308,350	246,680	185,010	8,325,570
20	850,000	76,500	315,850	252,680	189,510	8,528,070
21	920,000	82,800	324,600	259,680	194,760	8,764,320
22	990,000	89,100	333,350	266,680	200,010	9,000,570
23	1,060,000	95,400	342,100	273,680	205,260	9,236,820
24	1,130,000	101,700	350,850	280,680	210,510	9,473,070
25	1,210,000	108,900	360,850	288,680	216,510	9,743,070
26	1,290,000	116,100	370,850	296,680	222,510	10,013,070
27	1,380,000	124,200	382,100	305,680	229,260	10,316,820
28	1,470,000	132,300	393,350	314,680	236,010	10,620,570
29	1,560,000	140,400	404,600	323,680	242,760	10,924,320
30	1,660,000	149,400	417,100	333,680	250,260	11,261,820
31	1,760,000	158,400	429,600	343,680	257,760	11,599,320
32	1,860,000	167,400	442,100	353,680	265,260	11,936,820
33	1,970,000	177,300	455,850	364,680	273,510	12,308,070

등급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B값)	연금보험료(9%)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일시보상금)
34	2,080,000	187,200	469,600	375,680	281,760	12,679,320
35	2,190,000	197,100	483,350	386,680	290,010	13,050,570
36	2,300,000	207,000	497,100	397,680	298,260	13,421,820
37	2,420,000	217,800	512,100	409,680	307,260	13,826,820
38	2,540,000	228,600	527,100	421,680	316,260	14,231,820
39	2,670,000	240,300	543,350	434,680	326,010	14,670,570
40	2,800,000	252,000	559,600	447,680	335,760	15,109,320
41	2,940,000	264,600	577,100	461,680	346,260	15,581,820
42	3,080,000	277,200	594,600	475,680	356,760	16,054,320
43	3,230,000	290,700	613,350	490,680	368,010	16,560,570
44	3,380,000	304,200	632,100	505,680	379,260	17,066,820
45	3,600,000	324,000	659,600	527,680	395,76	17,809,320

- 주) 1.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08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등급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급)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30년
1	220,000	19,800	94,840	154,650	194,440
2	230,000	20,700	95,340	155,390	195,330
3	240,000	21,600	95,840	156,130	196,230
4	250,000	22,500	96,340	156,880	197,120
5	260,000	23,400	96,840	157,620	198,010
6	270,000	24,300	97,340	158,360	198,900
7	290,000	26,100	98,340	159,840	200,690
8	310,000	27,900	99,340	161,330	202,470
9	340,000	30,600	100,840	163,550	205,150
10	370,000	33,300	102,340	165,780	207,830
11	400,000	36,000	103,840	168,000	210,510
12	440,000	39,600	105,840	170,970	214,080
13	480,000	43,200	107,840	173,930	217,650
14	520,000	46,800	109,840	176,900	221,220
15	570,000	51,300	112,340	180,610	225,680
16	620,000	55,800	114,840	184,320	230,140
17	670,000	60,300	117,340	188,030	234,600
18	730,000	65,700	120,340	192,480	239,960
19	790,000	71,100	123,340	196,930	245,310
20	850,000	76,500	126,340	201,380	250,670
21	920,000	82,800	129,840	206,570	256,920
22	990,000	89,100	133,340	211,760	263,160
23	1,060,000	95,400	136,840	216,950	269,410
24	1,130,000	101,700	140,340	222,140	275,660
25	1,210,000	108,900	144,340	228,080	282,800
26	1,290,000	116,100	148,340	234,010	289,940
27	1,380,000	124,200	152,840	240,680	297,970
28	1,470,000	132,300	157,340	247,360	306,000
29	1,560,000	140,400	161,840	254,030	314,040
30	1,660,000	149,400	166,840	261,450	322,960
31	1,760,000	158,400	171,840	268,870	331,890
32	1,860,000	167,400	176,840	276,280	340,810
33	1,970,000	177,300	182,340	284,440	350,630

등급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급)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30년
34	2,080,000	187,200	187,840	292,600	360,450
35	2,190,000	197,100	193,340	300,760	370,260
36	2,300,000	207,000	198,840	308,920	380,080
37	2,420,000	217,800	204,840	317,820	390,790
38	2,540,000	228,600	210,840	326,720	401,500
39	2,670,000	240,300	217,340	336,360	413,100
40	2,800,000	252,000	223,840	346,000	424,710
41	2,940,000	264,600	230,840	356,380	437,200
42	3,080,000	277,200	237,840	366,770	449,700
43	3,230,000	290,700	245,340	377,890	463,080
44	3,380,000	304,200	252,840	389,020	476,470
45	3,600,000	324,000	263,840	405,330	496,110

- 주)1.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08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6,837원)으로 산정 · (10년 미만은 2008년 가입, 10년~20년 미만은 1994년~2008년(15년), 20년은 1989년~2008년(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안내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행인 박 해 춘

편집인 한 수 균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공원길 13(신천동 7-16)

TEL. 2240-1114